



프랑스의
'국가원수 모독죄':
탄생에서 소멸까지

피의사실공표죄
강화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Vol.130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언론 중재



인터넷 빅브라더
Google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유럽

설리번 판결 50주년과
언론의 자유:
제1 수정헌법의
국제적인 영향



2014 Spring



상상하는 역사의 양날 -
역사드라마의 허구,
그 경계선은?

'비상한 공적 관심사'라는
비상한 논리



인쇄 2014년 3월 27일
발행 2014년 3월 30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00002
발행인 정학철
편집인 오광건
인쇄인 박인성
발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FAX 02-397-3069
www.pac.or.kr
편집·인쇄 비주얼트랜드 02-517-5450

편집위원

이영진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8중재부 위원 / 변호사
황용석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
이선민 조선일보 여론독자부장
심석태 SBS 국제부장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 중재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4 Spring

Vol.130



CONTENTS

FOCUS ON MEDIA

- 06 프랑스의 '국가원수 모독죄' : 탄생에서 소멸까지 · 박진우
- 14 인터넷 빅브라더 Google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유럽 · 박문석
- 24 '비상한 공적 관심사'라는 비상한 논리 · 이승선

칼럼

- 34 진실 앞에서 낮아져야 하는 이유 · 권석천

사건 속 법률

- 38 피의사실공표죄 강화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 한위수

판례토크

- 46 댓글의 자유와 악플의 책임 · 박형연

MOVIE WITH LEGAL MIND

- 50 탐정 : 조사(調査)와 결합(結合) · 김상순

06



50



기고문

- 56 설리번 판결 50주년과 언론의 자유 : 제1 수정헌법의 국제적인 영향 · 염규호
- 70 상상하는 역사의 양날 – 역사드라마의 허구, 그 경계선은? · 양동복

해외통신원 기고

- 80 2013년 독일 언론보도 관련 불만 현황과 주요 내용 · 김세환

고충처리 노트

- 92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
홍익범 반론도 경청하며 피해 구제에 최선 다해 · 최병국

조정중재 현장

- 96 '조정성립률 90%' 환자와 의사 모두의 고통을 따뜻하게 보듬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백승선

56



80





프랑스의 ‘국가원수 모독죄’ : 탄생에서 소멸까지



글. 박진우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프랑스의 국가원수 모독죄는 1881년 7월 29일자로 제정된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du 29 juillet 1881)>에 근거를 둔다. 이 법은 제정 이래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언론 자유의 원칙, 더불어 언론 자유를 둘러싼 주요한 쟁점들(예컨대 ‘언론 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률적 규정, 반론권 및 정정권 등)을 규정한 기본법으로서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 있다. 논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 법에는 제23조, 제26조, 제36조, 그리고 제37조를 통해 특정 개인, 공무원 그리고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독 등에 관한 다수의 조항이 들어 있다. 그런데 2013년 가을, 프랑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에 띄는 법률 개정이 있었다. 다름 아니라, 오랫동안 법률 속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사문화되어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이다.

그것은 지난 2008년 프랑스의 한 지방의원과 당시 대통령 사이에 벌어졌던 ‘대통령 모독죄’ 적용을 둘러싼 국내 및 유럽재판소 차원의 공방의 결과물이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개요를 우선 간략히 살펴보고, 뒤이어 프랑스의 국가원수 모독죄 폐지와 결합되어 있는 몇 가지 쟁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꺼져, 병신아!(Casse-toi, pauv' con!)” : 사르코지-에온 사건의 전후 맥락

국내의 언론에 단편적으로 전해진 것과는 달리, 이 구절은 약간의 ‘연원’을 가진 정치적 표현이다. 이 말을 처음 내뱉은 사람은 다름 아닌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전(前) 대통령이다. 2008년 2월 23일, 파리에서 연례적으로 열리는 농업 박람회(Salon de l'agriculture)를 방문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행사장에 운집한 농민들 속을 걸으면서 악수를 하였다. 그런데 한 농부가 대통령의 악수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는 “아, 싫어, 나 건드리지 마, 내 손 더러워져(Ah non, touche-moi pas! Tu me salis!)”라고 말했다. 그러자 돌아서는 대통령의 입에서 “그래, 꺼져, 병신아(Casse-toi, pauv' con!)”라는 말이 불현듯 새어나왔다. 문제는 이 발언 장면이 주변에 있던 일간지 <르 파리 지앵> 기자들의 카메라에 담겼고, 동영상 자체가 인터넷 공간에 퍼져나갔다는 점이다. 다음날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나아가 멀리 CNN의 뉴스에서도 해당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뒤이어 일간지 <르몽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2007년 11월에도 작은 항구도시인 길비백(Guilvinec)에서 있었던 어부들과의 만남에서도 이러한 발언을 하였던 적이 있다고 폭로하여,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당시 여당이던 UMP의 대변인은 이 사건이 “국가원수에게 린치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었다고 해명하였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의 비판에서 비켜나기는 힘들었다.¹⁾



프랑스의 한 농부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서로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 <르 파리지앵>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
(출처 : Sudouest, 「L'imposteur du "casse-toi pov'con" de Sarkozy de retour?」, 2011년 2월 15일자)

1) Laurent Merlet, “L’offens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ivres hebdo, n° 760, 16 janvier 2009, p. 70.

그해 8월 28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북부의 공업도시 라발(Laval)을 방문하였다. 그날 이 지역의 진보정당 소속 지방의원인 에르베 에온(Hervé Eon)은 “꺼져, 병신아!”라는 글귀가 쓰인 팻말을 들고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는 대로변에서 있었다. 에온 의원은 당시 언론을 통해 유명해진 이 표현을 통해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어쨌든 대통령 개인에게 충분히 ‘노이로제’를 일으킬 법한 이 일에 대하여 정부 측은 매우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오랜 국가원수 모독죄 규정이 다시금 동원되었다. 그 결과 2008년 10월 23일에 열린 1심 법정에서 에온 의원에게 벌금 1천 유로가 구형되었고, 11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는 벌금 30유로(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009년 2월, 에온 의원과 소속 진보정당이 공동으로 항소에 나서면서

이 사안은 유럽재판소에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유럽재판소는 2013년 4월 이 조항이 국제인권협약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수용하여 프랑스 국내에서도 2013년 8월에 이 조항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전말 속에서 이제부터 쟁점으로 삼아야 할 몇 가지 과제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이 법을 포함한 프랑스 언론법제 속의 명예훼손 및 공직자 모독 관련 언론법제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국가원수 모독죄를 둘러싼 구체적인 규정과 그 ‘정치적’ 맥락을 검토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재판소에서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원수 모독죄가 폐지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는 일이다.

프랑스의 국가원수 모독죄 : 역사와 맥락

넓은 틀에서 보자면, 프랑스의 국가원수 모독죄는 1881년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특히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규정들의 맥락 속에 위치한다. 1881년 언론법은 언론 자유의 광범위한 보장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언론 자유를 남용하는 사례에 대한



지방의원 에르베 에온이 “Casse-toi, pauvre con”라는 글귀가 쓰여진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출처 : 1001actus, 「30 euros d’amende avec sursis, pour avoir offensé Sarkozy», 2009년 3월 25일자)

민·형사상의 제재 조항들을 함께 규정하였다. 명예훼손, 중상(中傷), 모독, 허위 정보의 전달, 전달이 금지된 정보의 전달, 표명이 금지된 의견의 표명이라는 6가지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²⁾

그중에서 국가원수 모독죄는 언론법 제26조 및 제36조에 규정된 ‘모독’ 관련 조항 속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프랑스의 대통령, 외국의 국가원수(및 행정 수반), 외국 정부의 외무부장관에 대한 모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지 형사 소송을 제기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모독죄에 대해서 법정은 법률 제26조에 의거, 3개월간의 징역, 혹은 300프랑에서 30만 프랑 사이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1992년 12월 16일자 법률(loi du 16 décembre 1992)에 의해 이중 처벌 조항이 폐지되었고, 2000년 6월 15일자 법률(loi du 15 juin 2000)을 통해 형사처벌 조항이 사라졌다. 따라서 2000년 이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는 공식적으로 벌금형만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가 되었다.³⁾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가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2013년 8월 5일자 법률에 따라 이 벌금형 조항이 마침내 사라졌다는 뜻이다.

1881년 언론법의 이 조항은 원래 프랑스와 외국 정부 사이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의 유지를 언론이 고의적으로 손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주요한 적용 대상은 자국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 정부나 외국의 국가원수들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모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언론사의 정치적 비판과 모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모독을 여타의 명예훼손이나 중상(Injure)과는 어떻게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당대부터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외국 정부 및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의 적용은(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모독죄와는 달리) 프랑스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 조항이 폐지되었던 2004년까지 심심찮게 꾸준히 이루어진 바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1984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프랑스 방문 당시 과도한 성적 표현을 담은 <르몽드>의 만평(漫評), 2000년 아프리카의 독재자들과 이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은밀한 지원을 고발한 어느 시민운동가의 저서, 그리고 2001년 가을 프랑스를 방문한 모로코의 하산 2세 국왕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르몽드>의 만평에 대한 적용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 국내 정치,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으로 초점을 맞추어 보면 사정이 조금 달라진다. 프랑스의 국가원수에 대하여 1881년 언론법 조항은 “국가원수로서의 공식적인 활동뿐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여기에는 대통령 선출 이전 시기의 일도 포함된다)에 대한 공격, 경

2) 6가지 조항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박진우, “프랑스의 언론법제: ‘언론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언론중재>, 2007년 겨울호, 58~63쪽을 참조.

3) 더불어 2000년 9월 19일자 행정명령(ordonnance du 19 septembre 2000)에 의해 벌금의 상한선이 45,000유로로 변경되었다. 이는 유로화 도입에 따른 화폐단위 전환을 위한 것이다. 벌금액 상한선 규모 자체는 동일하다.

멸 혹은 일체의 명예훼손적 중상의 표현”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부가조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그것이 대통령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문서 상의 것, 그리고 공개적으로 행해진 구두 발언 모두가 그러한 표현에 해당하며, 아울러 그림(테생) 또는 합성사진(photomontage)도 포함된다. 더불어 그러한 표현의 맥락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조항은 해당 표현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든 아니면 그저 역사적인 차원의 비판이든지 무관하게, 표현 그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⁴⁾

이렇듯 명시적으로 자국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죄가 적용되는 대상은 대단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둘러싼 실제 집행의 역사 그리고 판례는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이 조항이 가장 광범위하게 또 자주 적용되었던 시기는 드골 대통령 시절(1958~1969 재임)이다. 그는 임기 중 약 5백여 차례 이 조항을 적용해 비판자들을 처벌함으로써, 프랑스 헌정사상 이 조항을 가장 ‘긴요하게’ 써먹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통령 모독죄를 둘러싼 다수의 판례가 산출되었던 것도 대부분 이 시기이다.

하지만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모독죄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비판은 드골 치하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우선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것 자체가 애당초 형법상 구성하기 대단히 어렵고 또 모호한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프랑스 시민들에게 지나치게 구체제 왕정하의 ‘불경죄(crime de lèse-majesté)’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하루빨리 현대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언어로 재구성되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드골 대통령의 취임과 프랑스 제5공화국의 출범이 알제리 내전이나 수에즈운하 위기와 같은 정치적 위기 국면과 맞물리면서 정권의 기반이 대단히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드골 대통령의 정치적 무기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측면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었다. 드골 대통령 재임 기간 이전이나 이후나, 정부 스스로 이 법률의 적용을 매우 엄격하게 제약하였다는 경험 또한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반증한다. 2008년 프랑스 상원에 제출된 보고로는 1881년 법률의 제정 이후 1945년까지 약 60년 동안 이 조항은 실제로 단 6차례 적용되었을 뿐이다.⁵⁾

드골 대통령을 뒤이어 취임한 조르주 폼피두(Georges Pompidou, 1969~1975 재임) 대통령은 임기 중 단 한 차례 이 조항을 적용하였을 뿐이다. 뒤이어 취임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 1975~1981 재임), 프랑소와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1981~1995 재임), 그리고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1995~2007 재임) 대통령 모두 공식적으로 이 조항을 더는 적

4) a, b et c Article 26 de la loi n°1881-07-29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5) Jean-Luc Mélenchon,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abroger le délit d'offens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abroger le délit d'offens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ésentée par Jean-Luc Mélenchon, Annexe au procès-verbal de la séance du 19 novembre 2008.

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2008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를 다시금 끄집어내기까지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유럽재판소의 결정과 국제인권협약 : 국가원수 모독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사르코지-에온 사건은 이처럼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지만 해결되지는 않았던 국가원수 모독죄 관련 사회적 논쟁의 불씨를 다시금 되살려냄으로써, 결정적으로 이 조항의 폐지라는 ‘역사적 진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 개입한 유럽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국제인권협약에 비추어 본 법적 정당성 구성요건 문제는 여기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1953년에 제정된 유럽인권협약(Convention européenne)의 제10조 2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반드시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바로 협약으로 보호받는 수많은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제약에 대하여 법적인 정당성이 요구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프랑스 정부는 오랫동안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수많은 규정을 여전히 유지함으로써 협약 위반이라는 시비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었다. 예컨대 국가가 안보상의 이유로 통신 사업자들에게 일부 시민들의 통화 내역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협약 제8조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1990년 판결이 대표적이다.⁶⁾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는 앞서 언급한 대로 1881년 법률에 근거를 둔다. 그리고 2006년에 있었던 유럽사법재판소(유럽인권법정, CEDH)의 판례에서도 재확인하였듯이, 이 법률은 법적 정당성 요건을 갖춘 사법적 근거에 해당한다.⁷⁾ 하지만 이 같은 형식적 요건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법적 정당성 요건 충족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인 것은 아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해당 법은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언론법은 법적으로 더욱 명료하게 정의된 ‘위반’ 규정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1995년 11월 22일자 판결에 따르면, 이 법률은 어떤 행위 혹은 행위의 결여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지에 대한 정당한 요건을 명료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⁸⁾ 1881년 언론법 제29조 1항에서 ‘명예훼손’이란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개인 혹은 법인을 비난함으로써 그의 명예나 평판을 침해하는 모든 주장과 비난”을 의미한다고 규정한 것과, 또 제29조 2항에서 “모욕적인 표현, 경멸적이거나 욕설에 해당하는 용어, 또 그것이 식별 가능한 대상을 향하는 경우”가 ‘중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모독’의 구체적인 명시가 이 법

6) CEDH, 24 avril 1990, *Kruslin c/ France*.

7) CEDH, 7 novembre 2006, *MAMERE c/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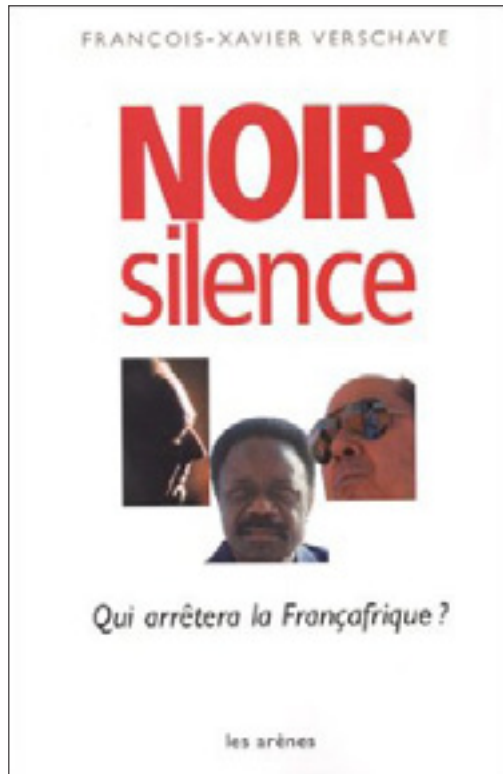
8) CEDH, 22 novembre 1995, *C.R. et S.W. c/ Royaume-Uni*.

속에 들어있지는 않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처럼 명료한 규정이 없기에, 국가원수 모독이란 수많은 행위에 대해서 추후 적용 가능한 것, 심지어 그 속에는 정권에 대한 단순한 비판적 의견 표명도 포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가 유럽 법정 차원에서 우선 가시적인 마찰을 빚게 되었다.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는 프랑스 국내법정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다. 2000년 아프리카의 독재자들⁹⁾의 실태, 그리고 이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은밀한 지원 정책을 고발한 《침묵의 검은 대륙(Noir silence)》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책의 저자인 시민운동가 프랑소와 자비에 베르샤브(François Xavier-Verschave)에게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를 적용하여 그를 처벌하고자 하였다. 이 소송에 대하여 파리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조항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정적으로 2001년 모로코 국왕에 대한 <르몽드>의 만평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 법정의 판결(arrêt COLOMBANI c/ France)은 이 조항이 언론법 제36조에 명시된 ‘언론 자유의 위배’의 6가지 예외조항의 하나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유럽법정은 2002년 6월 25일자 판결을 통해, 언론사가 외국 국가원수에 예의를 갖추도록 도의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항상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마찬가지로 유럽 법정은 이 사건이 과연 외국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이나 ‘중상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¹⁰⁾

따라서 판결은 공식적으로 언론사의 승소로 끝났고, 또 프랑스 정부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의 삭제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그 결과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는 2004년 3월 9일자 법률



2000년,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의 실태 및 이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은밀한 지원 정책을 고발한 시민운동가 프랑소와 자비에 베르샤브(François Xavier-Verschave)의 저서<침묵의 검은 대륙 (Noir silence)> 표지

9) 이드리스 데비(Idriss Déby) 차드 대통령(1990~재임 중), 드니 은구에소(Denis Sassou Nguesso) 콩고 대통령(1979~1992, 1997~재임 중), 오마르 봉고(Omar Bong) 가봉 대통령(1967~2009 재임, 2009년 사망)을 말한다.

10) CEDH, arrêt du 25 juin 2002, Colombani et autres c/ France.

(loi Perben II du 9 mars 2004) 제52조에 의해 공식적으로 언론법 속에서 삭제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보여준 이러한 입장은 결국 에온/프랑스 정부 소송으로 이어져, 대통령에 대한 모독죄의 최종 폐지라는 결과를 빚어내었다. 2013년 3월 14일에 내려진 판결¹¹⁾은 일단 프랑스 법정의 유죄 판결이 법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판결은 국가원수 모독죄의 적용을 대단히 좁은 범위로 한정하여 적용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오직 대통령의 사생활 및 개인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에 한정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입법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프랑스 의회는 2013년 5월 15일에 지난 130년 동안 언론법 속에 유지됐던 국가원수 모독죄에 대한 처벌 조항의 수정 작업에 나서게 되었다. 수정 방향은 결국 해당 처벌 조항의 삭제로 의견이 모였고, 마침내 2013년 8월 5일자 법률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마치며

이상의 내용은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법적으로 규정되었던 (국내외)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 적용의 법적 근거, 역사적·정치적 맥락, 그리고 최종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판례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 논의 자체는 물론 여러 가지 맥락에서 국내의 현실과는 많은 상이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 대한 논의가 국가원수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많은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한 논의를 새롭게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1) CEDH, arrêt du 14 mars 2013, Eon c/ France.

인터넷 빅브라더 Google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유럽



글. 박문석
영남대 E센터 연구원, 법학박사

최근 유럽에서 논란되는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

2012년 1월 24일 Google은 기존의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방침으로는 이용자가 Google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통합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고,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새로운 통합 개인정보 취급방침(이하 '새로운 통합정책'으로 함)을 3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개인정보 보호기관들은 인터넷

거인 Google이 무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많은 Google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Google의 일방적인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특히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이 발표된 직후 유럽에서는 Google이 EU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이하 'EU지침'으로 함)과 회원국의 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즉각적으로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Google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는 이용자를 위해 Google 서비스에서 정보공유를 거부할 수도 있고, 온라인 맞춤

형 광고에 대해서 이용자가 수정 및 해제할 수 있고, 또한 크롬에서 시크릿 모드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이번 새로운 통합정책에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Dashboard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모든 Google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의 사용현황을 검토·설정·변경할 수 있다. 게다가 개인정보 통합과정에서의 잠정동의에 대한 Opt-Out(사후철회)기능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기관들이 제기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를 관장하는 당국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인 Article 29 Working Party(이하 ‘WP29’으로 함)는 Google이 발표한 새로운 통합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임시실무그룹(ad hoc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프랑스 정보보호위원회(CNIL)로 하여금 새로운 통합정책에 관해 Google과 논의를 이끌어 가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다. 2012년 2월 2일 WP29는 Google에게 임시실무그룹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통합정책의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Google은 WP29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2월 27일 CNIL은 “새로운 통합정책에 관한 논의를 Google과 하도록 WP29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며, 우리의 사전 조사결과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은 EU지침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니 그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또한 “Google이 발표한 새로운 통합정책에 대해 관계 당국들과 광범위한 사전심의를 거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의한 바 없으며, 일부 정보보호기관은 발표일에 임박하여 관련내용을 제공받아 심의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Google에게 보냈다.

이러한 CNIL의 시행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1일 Google검색엔진, 유튜브, 캘린더, Google토크, G메일, Google+, Picasa, Google맵스, 스마트기기OS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등 60여 개 이상의 Google 서비스에서 시행하던 각기 다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온라인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전 세계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Google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통합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CNIL은 3월 16일에 Google에 대해 일방적 시행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총 69개의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보내어 Google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였다. 5월 22일에도 CNIL은 Google에게 추가질의를 담은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CNIL의 질의 서신에 대해 4월 20일과 6월 21일에 Google은 답신을 보내왔으나 CNIL은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CNIL과 Google간의 서신을 통한 새로운 통합정책에 관한 논의과정을 지켜본 WP29는 2012년 10월 16일 WP29의 27개국 개인정보보호기관 당국자가 서명한 서신을 Google에 전달하였는데, 이 서신의 주요 내용은 Google이 EU지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WP29의 결론을 담고 있었다. 11월 21일에 CNIL은 Google이 2013년 2월 15일 전까지 WP29의 권고를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에도 양측 간에 더 많은 의견이 오간 후 영국,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함부르크 주 정부의 정보보호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상대표들과 Google은 CNIL 사무국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이에 Google은 자사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2013년 3월 26일 서신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3월 29일 WP29를 대표해서 조사를 진행해온 CNIL은 Google의 제안이 EU지침을 준수하기에는 상세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약속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CNIL의 Google의 제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4월 2일에 위의 유럽 6개국 정보보호기관은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이 EU지침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2013년 11월 28일 네덜란드 CBP가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에 대해 네덜란드 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12월 19일 스페인 AEPD의 Google에 대한 90만 유로의 과징금부과 결정이 있었고, 2014년 1월 8일 프랑스 CNIL의 15만 유로 과징금부과 결정 발표가 이어지는 등 유럽에서는 인터넷 빅브라더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에 대해 법적 제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최근 Google에게 제재결정을 내린 네덜란드 CBP, 스페인 AEPD, 프랑스 CNIL의 제재결정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Google의 반응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네덜란드 CBP, Google의 정보보호법 위반결정

2013년 11월 28일 네덜란드 정보보호국(College bescherming persoonsgegevens : 이하 'CBP')



네덜란드 정보보호국(CBP)의 새로운 통합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Google 정보보호법 위반결정내용 캡처 (출처 : CBP 홈페이지[http://www.cbpreweb.nl/Pages/pb_20131128-google-privacybeleid.aspx], 2013년 11월 28일자)

로 함(영문약칭은 DPA))은 Google이 이용자에게 사전에 적절한 고지도 없이 그리고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서 Google이 제공하는 각기 다른 모든 서비스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결합하였다는 자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3월 1일 Google의 새로운 통합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시행된 이후 Google에 의해 결합된 개인정보는 네덜란드 정보보호법(Wet bescherming persoonsgegevens)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했다.



네덜란드 정보보호국(CBP)의 Google 정보보호법 위반결정을 보도한 네덜란드 공영방송 인터넷판 기사 캡처 (출처 : NOS, 「CBP: Google overtreedt wet」(<http://nos.nl/artikel/580320-cbp-google-overtreedt-wet.html>), 2013년 11월 28일자)

CBP의 Jacob Kohnstamm 의장은 “Google이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치고 있으며, 이것은 네덜란드 정보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CBP는 Google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 위해 Google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에 브뤼셀에 있는 Google 유럽본부의 대변인은 “Google은 EU법을 준수하며 간단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정보 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CBP의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Google의 입장을 밝혔다.

스페인 AEPD, Google에 과징금 90만 유로 부과

네덜란드 CBP에 이어 스페인 정보보호국(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 이하 ‘AEPD’로 함)도

Google이 새로운 통합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시행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결합하여 개인정보를 무기한 보존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Google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2013년 12월 19일 발표하였다.

AEPD의 구체적 제재내용과 이유를 살펴보면, AEPD는 Google이 스페인정보보호법(la normativ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 이하 ‘LOPD’로 함)상의 개인정보보호조항 3개를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Google의 3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3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총 90만 유로(약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결정을 함과 동시에 Google이 신속히 LOPD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

AEPD가 제재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Google의 3가지 LOPD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Google은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을 위해 수집·사용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둘째, Google은 새로운 통

합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합리적 기대를 방해하였다. 셋째, Google은 수집 및 결합한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무기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규정한 LOPD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AEPD는 스페인헌법 제18조와 LOPD에 의해 보장되는 ARCO의 권리로서 개인정보접근(Acceso)권, 개인정보수정(Rectificación)권, 개인정보취소(Cancelación) 및 반대(Oposición)권을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이 방해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스페인법규범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AEPD의 제재결정에 대해 Google은 “우리의 새로운 통합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이용자에게 훨씬 더 간편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지를 AEPD에 설명하고자 한다.”며 “AEPD의 제재결정에 관한 보고서를 주의 깊게 읽고 다음 단계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CNIL, Google에 과징금 15만 유로 부과
스페인 AEPD의 Google에 대한 과징금부과 결정이 내려진 20여 일 후 WP29의 위임을 받아 Google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던 프랑스의 정보보호위원회인 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 정보화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은 Google에 대하여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인 15만 유로(약 2억 2000만원)를 부과한다고 2014년 1월 8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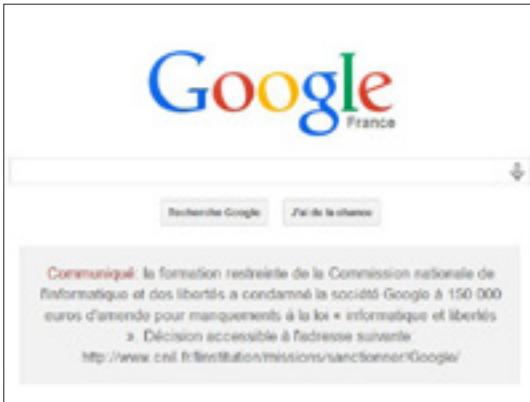
2014년 1월 3일 CNIL의 제재위원회는 Google이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통합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프랑스 정보보호법(Loi no 78-17 du 6 janvier 1978 modifiée)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정보수집에 있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과 개인정보수집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스페인 정보보호국(AEPD)의 Google에 대한 제재결정내용 캡처 (출처 : AEPD 홈페이지[http://www.agpd.es/portalwebAGPD/revista_prensa/revista_prensa/2013/notas_prensa/common/diciembre/131219_NP_AEPD_POL_PRIV_GOOGLE.pdf], 2013년 12월 19일)



스페인 정보보호국(AEPD)이 Google에게 90만 유로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는 기사 (출처 : El País, 「Sanción a Google por vulnerar derechos del ciudadano」(http://tecnologia.elpais.com/tecnologia/2013/12/19/actualidad/1387450618_053467.html), 2013년 12월 19일자)



프랑스판 Google 홈페이지 캡처
 “공식발표 : 프랑스 정보보호위원회(CNIL)의 제재위원회는 프랑스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한 Google에 15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은 아래의 인터넷주소에서 전문을 읽을 수 있다: <http://www.cnil.fr/institution/missions/sanctionner/Google/>.” (출처 : 프랑스판 Google 홈페이지[www.google.fr], 2014년 2월 8일)

은 “우리는 그동안 60개가 넘는 Google 서비스에 적용되던 서로 다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하나로 관리하는 통합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CNIL과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우리의 새로운 통합정책은 EU법 및 EU회원국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의향이 없다.”라며 이

서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 그리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는지에 관해서 보존기간을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프랑스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 결정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CNIL은 Google의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정보보호법 제 45조의 1 (I de l'article 45)에 근거해서 Google에게 15만 유로의 과징금부과 결정과, 결정서를 수령한 후 8일 이내에 프랑스판 Google 홈페이지(www.google.fr)에 오전 8시부터 연속해서 48시간 동안 Google에 대한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을 게시하도록 명령했다.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 발표가 있는 후 Google

은 이번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14일 Google은 이번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명령이 Google의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CNIL의 제재결정 중 일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청구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에 제기하였다. 이에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2월 7일 Google의 청구에 대해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을 Google이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인해 Google의 명성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 게시명령에 Google이 제기한 효력정지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Google은 최고행정법원의 결정과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 게시명령을 준수하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Google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기사 캡처 (출처 : Le Monde, 「Le Conseil d'Etat rejette une requête de Google contre la CNIL」(http://www.lemonde.fr/technologies/article/2014/02/07/le-conseil-d-etat-rejette-une-requete-de-google-contre-la-cnil_4362485_651865.html), 2014년 2월 7일자)

겠다고 하면서도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2월 8일 Google은 CNIL의 결정문에서 제시하고 과징금부과 결정의 게시방법에 따라 프랑스판 Google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Recherche Google”과 “J’ai de la Chance”의 버튼 바로 아래에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을 게시하였다. 이날 오전에 CNIL의 과징금부과 결정이 Google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CNIL의 제재결정내용을 확인하려는 네티즌들이 CNIL 홈페이지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오전 한때 다운되기도 하였다.

이상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은 유럽국가의 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에서는 Google에 대한 과징금 등의 법적 제재가 시작되었다. 또한, 2013년 4월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기관과 함께 Google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한 영국·독일·이탈리아의 개인정보보호기관들도 빠르면 올해 안으로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에 대한 제재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터넷 빅브라더로 평가되는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은 EU와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규범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 멈추게 될 것이며, EU와 회원국이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Google은 새로운 서비스제공을 통해 인터넷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계획을 유럽에서 실현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유럽에서의 Google Street View에 의한 사생활침해 논란

Google이 유럽에서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킨 것은 앞에서 언급한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의 시행만이 아니다. 2007년 5월 미국에서 처음 Google 스트리트뷰(Google Street View : 이하 ‘GSV’로 함)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거리사진정보에 담긴 신원이 확인되는 난처한 사람의 모습과 유흥업소 등을 출입하는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활동모습, 그리고 특정 거리와 건물번호 및 자동차번호 등과 결부되어 특정인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사진정보가 적나라하게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면서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Google은 “거리사진정보에서 담긴 사람의 얼굴이나 집주소 또는 자동차번호 등의 신원확인 가능한 정보에 대해 모자이크처리나 사진을 흐릿하게 하여 제공하고, 나아가 GSV에서 제공되는 사진정보를 원치 않는 사진 속 관계자의 삭제요구를 보장하는 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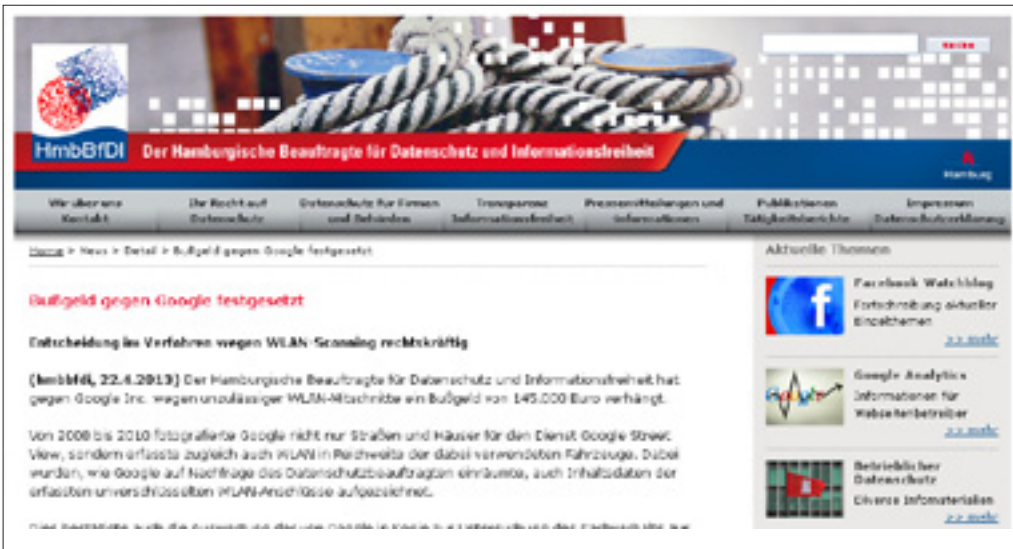
하지만 2010년 GSV의 사생활침해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GSV서비스를 위해 거리모습사진을 촬영하는 GSV특수차량이 촬영 주변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데이터전송시스템(Wi-Fi)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로그ID, 비밀번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MAC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등을 GSV특수차량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였다. CNIL은 2010년 6월 4일 Google로부터 GSV촬영사진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 2개와 서버접속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ID·패스워드·로그인 정보·이메일 등이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된 것을 확인하였다. Google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동안 GSV특수차량으로 이메일·이용자이름·비밀번호·사진·동영상·서류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해왔다. 이러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Google은 “우리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하면서 “Google은 GSV특수차량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였다. 이하에서는 CNIL과 독일의 함부르크 정보보호위원회(HmbBfDI)가 Google이 GSV특수차량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것에 대한 제재결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1년 3월 21일 CNIL은 GSV와 관련하여 Google에 10만 유로(약 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3월 17일 CNIL은 Google이 위치기반 서비스인 Google맵스의 GSV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몇 년 동안 Wi-Fi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적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CNIL은 프랑스 정보보호법상 정보처리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일련의 현장검사를 시행하였다. 이 검사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사전고지 없이 Wi-Fi정보(ID·패스워드·로그인 정보·이메일 등)를 수집하는 등 Google의 다양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CNIL은 2010년 5월 공식적으로 이런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Google에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요청을 Google이 즉시 응답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2011년 3월 17일 CNIL 제재위원회는 Google



프랑스 정보보호위원회(CNIL)의 Google Street View 서비스에 대한 10만 유로 과징금부과 발표내용 캡처
(출처 : CNIL 홈페이지[http://www.cnil.fr/institution/actualite/article/article/google-street-view-la-cnil-prononce-une-amende-de-100-000-euros/]. 2011년 3월 21일자)



독일 함부르크 정보보호위원회(HmbBfDI)의 Google에 대한 14만 5천 유로 과징금부과 발표내용 캡처(출처 : HmbBfDI 홈페이지 [http://www.datenschutz-hamburg.de/news/detail/article/bussgeld-gegen-google-festgesetzt.html], 2013년 4월 22일자)

에 대해 1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3년 4월 22일 독일 ‘데이터보호와 정보의 자유를 위한 함부르크 정보보호위원회’(HmbBfDI : 이하 ‘함부르크 정보보호위원회’로 함)는 Google이 Wi-Fi네트워크의 불법적인 녹취행위에 대해 Google에게 14만 5천 유로(약 2억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 결정을 하였다고 발표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Google은 GSV서비스를 위해 거리와 집의 사진촬영뿐만 아니라 동시에 GSV특수차량의 촬영범위 이내에서 Wi-Fi네트워크의 전파를 탐색하였다. ‘GSV특수차량의 촬영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Wi-Fi네트워크의 정보를 기록해 왔다’는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 Google은 인정하였다. Google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복사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Google의 인정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함부르크 정보보호위원회의 Johannes Caspar 위원장은 “Wi-Fi네트워크를 통해 기록된 정보 중에는 이메일, 패스워드, 사진, 채팅프로토콜 등과 같은 대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Google은 이에 대해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을 인정하고, 위의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 또한 Johannes Caspar 위원장은 “독일 연방정보보호법 위반에 이렇게 적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한 현재 법규로는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위 과징금부과 결정을 평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함)도 Google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 부산, 경기(일부), 인천(일부)지역의 거리모습을 담은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암호화 되지 않은 Wi-Fi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로그인 정보,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과 60만 건의 MAC주소를 무단을 수집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이라며 글로벌 기업 Google에 대해 과징금(약 2억 1200만원) 부과를 의결하였다. 또한, 동의 없이 수집한 모든 관련 개인정보의 삭제와 삭제과정에 대해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는 시정조치명령도 함께 의결하였다. 그리고 Google에게 CNIL과 같이 한국판 Google 홈페이지에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통위의 조치는 글로벌 기업 Google의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전 세계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을 중심으로 인터넷 빅브라더 Google의 불법적인 일련의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해 제동을 거는 조치들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간 Google은 인터넷 및 모바일시장에서 최고의 IT기술로 시장을 장악하고 Google만의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통해 IT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자신의 힘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 Google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가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Google이 여전히 인터넷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예측은 Google의 사훈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의 반대추론을 통해 예전부터 예측되었다.

이처럼 Google이 인터넷에서 빅브라더라는 별칭에 만족하지 않고 빅브라더를 넘어 빅 GOD(네티즌사이에서는 'Google神'으로 지칭되기도 함)가 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근 EU와 유럽국가들이 보여준 일련의 Google에 대한 제재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에 대해 그동안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 효과적인 제재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유럽의 사례에서 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Google의 새로운 통합정책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과 관계기관의 대응 및 정책개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유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방통위의 Google에 대한 제재는 그것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Google도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에 있어서 투명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각국의 정부 및 Google 이용자와 네티즌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쌓아야만 진정한 인터넷의 거인으로서 역할과 지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에게 Google이 'Don't be worry.'라고 외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비상한 공적 관심사’라는 비상한 논리

: ‘정수장학회-MBC 비밀회동’ 보도와
통비법 위반죄 판결을 중심으로



글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수장학회-MBC 비밀회동’ 보도와 법원의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대해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¹⁾ 통비법을 위반한 언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것은 이전에도 이미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 기자는 2012년 10월 13일 한겨레 1면에 ‘최필립의 비밀회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10월 8일故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과 만나 ‘MBC·부산일보 지분을 다 팔아버리자’는 등의 밀실 합의를 했고 그 자금으로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후원사업’을 기획했다는 내용이였다. 1면 기사에는 최 이사장과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얼굴 사진이 크게 실렸다. MBC는 불공정 방송의 정상화와 김재철 사장 퇴진을 내세운 노조의 장기간 파업, 그에 따른 구성원 징계 조치로 내용을 심각하게 겪고 있던 때였다. 더욱이 그 무렵 법원은 전 부산MBC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산 반환 소송에서 정수장학회의 모태가 된 재산을 국가가 강

압에 의해 취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청구시효가 지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한 맥락 위에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3고단2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2841 판결



2012년 10월 13일 한겨레 1면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정수장학회 재산처리 문제로 야권과 언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있던 터였다. 한겨레는 이를 후 10월 15일 월요일자에 ‘최필립-MBC 비밀 회동 파장, 10월 8일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의 대화내용이 상세하게 다루어졌다.

은밀하게 이루어진 회동 그 자체를 보도한 것도 놀라웠거니와 그 회동에서 나는 대화의 내용은 독자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특히 관련 재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의 일부를 ‘특정 지역’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으로 지원하자고 했다는 이야기는 그 후 여러 갈래의 논쟁을 촉발했다. 대화에서 모색한 것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 단위 대학생이라는 주장도 그중의 하나였다. MBC는 즉각, 그리고 여러 차례, 자사의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한겨레 보도를 반박하고 한겨레가 교묘하게 내용을 왜곡하여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겨레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리고 한겨레도 MBC를 상대로 정정·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은 한



MBC 뉴스데스크 2012년 10월 15일자 보도 캡처(출처 : 오마이뉴스, 「MBC, '정수장학회 보도' 한겨레 상대 소송 '기각」, 2013년 9월 5일자)

겨레의 기사가 허위인지 입증할 수 없고, 또한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라고 입증되지도 않았다면서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양측이 그동안 자신의 매체를 통해 충분히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다며 반론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성진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았다. 최 기자가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의 회동 사실 그리고 그들의 정수장학회 재산 매각 및 선거지원 방법과 관련된 대화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최 이사장과 연결돼 있던 핸드폰의 도움을 받아서였다. 당시 최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진숙 본부장 등의 방문을 받은 최 이사장은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고 최 기자와 대화를 끝냈다. 평소 전화통화를 끝낼 즈음에 뒷사람보다 늦게 종료 버튼을 작동하던 최 기자의 핸드폰은 연결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고 방문객이 다름 아닌 이진숙 홍보기획본부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 이사장과 대화할 때부터 최 기자의 핸드폰은 녹음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 기자의 핸드폰은 '최필립-이진숙 등'의 대화가 진행되던 당일 오후 5시 55분까지 녹음 상태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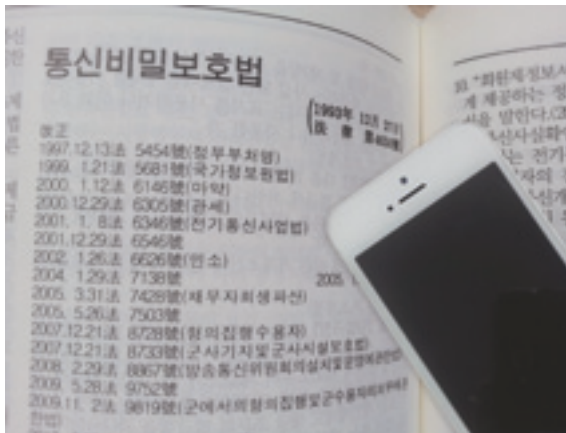
최 기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이를 녹음하고, 또한 그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녹음 행위, 그리고 녹음으로 알게 된 내용을 보도한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화를 청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형에 처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원심을 파기한 항소심 판단은

세 가지 점에서 1심과 달랐고 ‘선고유예’ 판결한 점에서 동일했다. 항소심은 우선, 최 기자가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 등의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한 행위는 1심의 판단처럼 부작 위가 아니라 ‘작위’에 해당하고 통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대화를 청취·녹음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애초부터 녹음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던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청취와 녹음의 대상이 되는 ‘대화’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최 기자의 녹음과 보도 행위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더불어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세 번째 다른 점은, 형량을 징역 4월에서 징역 6월로 높인 것이다.

‘정수장학회-MBC 비밀회동’ 판결의 법적 쟁점

이 글은 1심과 항소심 판결에 대한 평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작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살아 있는 정치 및 자본 권력의 비밀스러운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직접 도청장치를 설치해 도청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녹음된 자료를 건네받았거나 이 사건처럼 ‘우연히’ 녹음을 통해 얻게 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할 경우 언론은 반복적으로 ‘통비법 위반죄’로 실형에 처하고 또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비밀대화의 당사자가 ‘정치·자본’ 권력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세력이거나 소수집단 구

성원이라면 그 내용을 취재·보도한 언론은, ‘선고유예’ 판결 따위는 커녕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언론사를 들춰볼 때 경험적으로 개연성이 높다. 또 다른 작은 결론 하나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몇 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제안대로 직접 도청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대화를 공개한 행위가, 명백히 공공성과 진실성을 가질 경우 엄격 심사를 통해 위법성을 조각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을 두어 죄책의 수위에 맞는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몇 가지 쟁점을 던지고 있다. 하나는, ‘청취·녹음’ 행위를 부작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작위로 보고 금지의무 위반죄로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돼 온 공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기획한 혐의가 있을 때, 더불어 그 대화의 당

사자가 우리 사회의 엄연한 공적 인물이 분명할 때 그들이 공개할 리 만무한 대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한 것을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세 번째는, 비록 공개되지 않았을지라도 대화 당사자와 대화의 내용에 비춰볼 때 그 사안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 직업적·사회적 책무라고 판단될 때, 현행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작위-부작위' 논란은 추후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저널리즘의 가치 차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다음 글을 보자.

맹세하건대, 그는 무죄입니다. 그의 무죄에 제 인생을 걸고, 제 명예를 걸겠습니다. 사십 년간의 제 작업과 그 작업이 허용하는 권위에 기대어 저는 그의 무죄를 단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론 모든 것, 제가 획득한 명성, 우리나라 문학의 확산에 기여한 제 작품들에 기대어 저는 그의 무죄를 단언합니다. 만일 그가 무죄가 아니라면, 제 작품이 사라져도, 제가 이론 그 모든 것이 무너져도 좋습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저에게 적대적입니다. 제 편으로는 오직 하나의 관념, 즉 진실과 정의의 이상만이 있을 뿐이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이 법정에서 명예훼손죄로 유죄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의 조국은 자신의 명예를 구해준 데 대해 제게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²⁾

인용 글은, 음지에 간혀 있는 조작된 진실을 빛의 세계로 견인해 낸 프랑스 문호 에밀 졸라의 최후 진술 일부이다. 그는, 일부 군인, 장성, 국방부, 군사 법정 그리고 주류 언론이 죄가 없는 드레퓌스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주장을 신문에 실었다. 그는 당시의 명예훼손법에 의해 고발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그의 행위는 순전히 의도적이라고 말했다.

당시 프랑스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한 그 기고문에서 에밀 졸라는, 행복추구권을 가진 인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의 열정, 즉 진실의 빛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라며 자신을 프랑스의 중죄 재판소로 소환해 푸른 하늘 아래서 조사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결국 그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법정은 에밀 졸라에게 명예훼손죄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벌금 3천 프랑을 선고했다. 더불어 그가 받았던 레지옹 도뇌르 훈장 자격도 박탈했다. 이른바 드레퓌스 사건의 '드레퓌스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1894년 10월 말, 드레퓌스 대위가 독일의 간첩이라는 혐의로 체포

2) 에밀 졸라 지음, 유기환 옮김 (2005), 『나는 고발한다』 (서울: 책세상, 122-123쪽).

되었다. 비공개된 군사법정은 드레퓌스가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편지의 필적 감정 결과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드레퓌스는 군적을 박탈당하고 종신 유배형을 선고받아 프랑스령 기아나의 '악마도'에 수감되었다. 1895년 프랑스 참모본부 정보국장 피카르 중령은, 문제가 된 편지는 드레퓌스가 아니라 에스테라지라는 군인이 쓴 것으로 프랑스 당국이 증거를 조작해 드레퓌스를 간첩죄로 처벌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상관인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군사법정의 오판을 바로잡을 것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아프리카의 근무지로 쫓겨났다. 그러나 피카르 중령은 이 사실을 변호사 친구에게 말했고 그 변호사는 다시 상원 부의장에게 전달했다. 드레퓌스 재심 운동에 참여한 핵심 인사 중의 한 사람이 에밀 졸라였다. 드레퓌스의 무죄 확인과 복원은 1906년에 마



「이상호 기자 X파일: 진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표지

무리되었다. 무려 12년이 걸린 셈이다. 1902년 사망한 에밀 졸라 역시 사후에 명예가 회복되었다. 1908년 프랑스 의회는 에밀 졸라의 유해를 조국을 빛낸 위인들이 묻혀있던 팡테옹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했다. 에밀 졸라는 배심원들 앞에서 행한 최후 진술에서, 진실은 통상 천둥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지듯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진실은 모종의 탐구와 모종의 지성을 필요로 요구한다고 말했다.³⁾ 에밀 졸라는 드레퓌스가 무죄라고 발언하는 것은 글 쓰는 작가로서, 한 국가의 지성으로서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같은 내용을 2006년 당시 MBC 소속이었던 한국의 이상호 기자도 이야기했다. 전 안기부 '미림팀'이 불법으로 도청하여 작성한 이른바 '삼성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사법처리된 이상호 기자는 '진실은 스스로 소리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다. 그는 '역사 속 진실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소리를 낸 적이 없다'며 진실의 말

값은 늘 비쌌기에 진실을 말한 자는 궁형을 당하거나 참형을 당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상호 기자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정하여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후 4년 4개월여 만에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다음 인용 글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상호 기자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3) 에밀 졸라 지음, 유기환 옮김 (2005), 앞의 책, 207-226쪽.

형벌은 교육적 효과를 담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똑같은 상황이 와도 순간의 망설임 없이 '삼성 X파일'을 보도할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7년이든 70년이든 얼마든지 고행을 감수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소수지만 더 많은 기자가 검찰과 사법부를 비롯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것입니다.⁴⁾

처벌자의 시각으로 보자면 도무지 '반성의 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상호 기자는, 1심 최후 진술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 재판과정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공소의 정당성을 존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성의 빛'은 같은 통비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한겨레 최성진 기자한테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법정의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대화 당사자들이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 처분 등의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전화를 끊고 아무것도 듣지 않은 척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더라면 그러한 자신을 과연 누가 기자라고 부르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자신더러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에게 허락된 이번 최후 진술 시간에 저는, 재판부에 무죄를 바라거나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기자의, 넓게는 시민의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문보도 이전에 제가 고민한 단 하나의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자로서의 양심과 저널리즘의 원칙이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건과 같은 상황이 백 번이든, 천 번이든 다시 온다 해도 저는 이번과 똑같이 행동하겠습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것이 양심을 따르는 길이라면, 앞으로도 그 길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⁵⁾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과 '비상한 공적 관심사'

저널리즘은 진실을 추구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권력을 감시하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제공해야 한다. 코바치와 로젠스털이 제시하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

4) 이상호 (2011. 3. 17.). 삼성 X파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 『이상호 기자 X파일: 진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서울 : 동아시야, 325쪽).

5) 최성진 기자 (201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항소심 최후 진술

칙들이다. 그들이 말한 바로는, 언론인은 그들의 개인적 양심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언론인이라면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편집책임자, 사주, 광고주, 그리고 시민과 당국의 권위에 이르기까지 이견을 말하거나 도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양심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다른 여러 가지 원칙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⁶⁾

통비법 위반죄로 법정에 선 한국의 기자들이, 자신의 양심에 비춰볼 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다시 동일한 선택을 하고 다시 법정에 서겠노라고 다짐하는 장면은 이 법의 규정상 한계와 법규 해석의 딜레마를 웅변하고 있다. 양심적 대체 복무를 용인하지 않는 현재의 합헌 해석과 입법상의 체계가 병역의 의무보다 더욱 지난한 것일지라도 대체적인 복무를 감당하겠다는 건강한 청년들을 감옥에 가두고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자칫 현행 통비법 체계와 법원의 해석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실행하는 언론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선고유예'범의 낙인을 찍게 될 것이다. 국회에 제안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입법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하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관련 판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비상한 공적 관심사'라는 법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성진 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항소심 법원은 공개된 대화의 내용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한다'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그리고 확언하기를,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수장학회 재산을 처분하여 반값 등록금과 특정 지역 노인정 등에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이 아니라 실행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지분 처리까지는 다수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정수장학회 재산처분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집중되고 이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예상된다라는 점, 그해 10월 19일에 지분매각 발표가 이루어졌더라도 대통령 선거까지는 2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어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효과 역시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애초 계획한 지분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서 법원은 그 내용은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비상한 공적 관심사'의 법리는, 무려 4년 이상 재판을 지연시켰던 대법원이 이상호 기자의 유죄를 확정할 때 발굴해 활용하였다. 이상호 기자가 '삼성 X파일' 내용을 보도했을

6) 빌 코바치·톰 로젠스틸 지음, 이재경 옮김 (2009),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327-320쪽).

때, 당시 1심 법원은 이 기자의 언론보도는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무죄 선고했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우리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제도이고,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중대한 정치행위로서 공명, 정당한 선거는 국가의 통치 질서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후보자와 선거 부정사범,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적·독점적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준법과 직무 순결성을 감안할 때 대화 자료의 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 자료를 취득한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이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언론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상호 기자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유예’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상호 기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당시 보도에 참여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매체의 보도·출판행위가 통비법 위반의 유죄임을 선언’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이 기자의 보도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 중에는, 보도 시점이 대화 시점으로부터 8년이나 지난 뒤여서 그 사이 대통령 선거가 두 번씩이나 치러졌다는 점, 보도된 대화의 내용은 보도 당시의 국정 운영이나 국가 정치 질서의 전개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따라서 그러한 보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출처: YTN, 「안기부 X파일 보도’ 유죄 확정, 2011년 3월 17일자)

는 점 등이 포함되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이러한 판단을 ‘비상한 공적 관심사’의 범리로 포장했다. 대법원은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 기준에 비춰볼 때, 문제가 된 대화가 보도 시점으로부터

터 8년 전에 이루어져서 보도 당시의 정치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즉,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최성진 기자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당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최 기자의 보도행위 역시 '비상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리대로라면 과연 '비상한 공적 관심사'라는 바늘귀를 통과할 '양심의 낙타 펜'이 향후 존재하거나 하겠는가? 필시 '비상한 공적 관심사'라는 법리는 양심의 작동 기제인 언론인으로 하여금 뻔히 뜬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하라는 지침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런 지침으로도 쓸모가 있겠다. 저, 중대한 비밀 모의를 하고 계시는 두 분의 공적 인물 여러분, 기자인 저에게 두 분의 대화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제발 제가 들을 수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다. 앞서 짧은 결론을 통해 말한 것처럼, 통비법을 개정해 불법 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행위에 대해 엄격 심사를 거쳐 위법성을 조각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언론인으로서 저널리즘의 중요한 원칙인 양심의 의무를 따라야 하는 것이 그 당연한 전제이기도 하다.

진실 앞에서 낮아져야 하는 이유



글.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1991년 1월 저는 수습기자였습니다. 선배 기자에게서 지시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원숭이 프로젝트’라고 해야 할까요. 당시 2호선 전철 문래역 옆에는 작은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원숭이들이 추위에 얼어 죽지 않는지 매일 숫자를 체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곱은 손으로 열 마리가 넘는 원숭이들을 세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한 놈이 굴속에 들어가면 비슷한 놈이 튀어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세길 여러 번. 한숨이 나왔습니다. 보름 쯤 됐을까요. 이걸 아니다 싶어 동물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숭이가 얼어 죽습니까?” “원산지가 어디라고 돼 있죠?” “팻말에 북해도라고....” “아, 개들은 추위에 강한데요.” “그, 그렇습니까?”

제 보고를 받은 선배 기자도 “그러냐?”며 멍쩍은 목소리로 지시를 거두어주었습니다. 요즘 새내기 기자들을 보면 그 시절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들도 정신없이 거리와 골목을 누비고

다니겠구나 하는 안쓰러움과 함께.

언론사에 입사하면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가리는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기사는 팩트(사실)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든, 칼럼이든 주제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기본 팩트가 틀리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문제는 그 팩트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문래공원의 원숭이 숫자처럼 딱 정해진 것이라면 원숭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라도 세 보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양쪽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란 고역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이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기사화되면서 퇴직을 했습니다. 얼마 후 그가 저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둘이 만난 자리에서 그가 내민 것

은 한통의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직접 언론사들을 찾아다니겠다고 하셔서...제가 대신 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예닐곱 페이지에 달하는 아버지의 편지는 아들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문장 하나 하나에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편지를 다 읽은 뒤 그에게 사건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연일 야근을 했던 때문인지 출근길 지하철에 서서 졸았습니다. 앞에 계신 여자 분이 얼굴을 돌려 쳐다봐서 그제야 몸이 닿은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물러섰는데...지하철 수사대 형사들이 조사를 해야 하니 내리자고...”

그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공교롭게도 어느 기자의 귀에 들어갔고 신문에 실리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몸이 닿은 건 사실이고, 당사자인 여성과 빨리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기사가 나온 다음엔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았고...모든 게 저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헤어진 뒤 저는 그의 목소리, 그의 표정을 떠올려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거짓일까. 문득 한 판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면 누가 거짓을 말하고, 누가 사실을 말하는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제한된 증거로 판단내릴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인간사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판결은 ‘가처분’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판결은 신(神)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재판 절차를 거친 판결도 가처분에 불과하다면 마감에 쫓기며 쓰는 기사는 더욱 완벽한 사실이라고 말하기 힘든 게 아닐까요? 기자 경력 20년을 넘으면서 점점 더 기사 쓰기가 어려워지는 건 내가 아는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젠가 한 외교관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신문에 외교 비사(秘史) 시리즈가 실렸는데, 한 등장인물의 증언이 내가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그때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저 분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입장에 따라 기억도 달라지는구나...”

기억이 양심까지 속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한계, 뇌의 한계인지 모릅니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기자는 최대한 ‘사실에 가까운 사실’을 찾아내 전달해야 합니다.

사실 전달의 의무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기사화 과정입니다. 한정된 지면에 한정된 분량으로 실어야 하는 기사는 취사선택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의 주제에 맞는 팩트는 살리고, 맞지 않는 팩트는 버려야 합니다. 전문가 멘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제에 맞는 멘트는 살리고, 맞지 않는 멘트는 죽입니다. 반쪽의 진실을 전달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주제에 맞는 팩트와 멘트를 잘 찾아내는, 빨리 찾아내는 기자를 우린 ‘민완(敏腕)기자’

라고 부릅니다. “특종과 오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거나 “특종 많은 기자가 오보도 많이 낸다”는 속설도 기사 작성 공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쪽 진실은 특종도 될 수 있고, 오보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진영논리가 공고해지면서 팩트마저 관점이나 주장에 오염되곤 합니다. 정치적 사건들은 양쪽 측면을 모두 갖기 마련인데 한쪽 측면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쪽은 ‘특종’이라고 말하고, 반대쪽에선 ‘오보’라고 말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양면의 진실을 모두 담는 저널리즘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롱 저널리즘(long journalism)’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미국 풀리처상을 수상한 LA타임스의 기사 한편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문의 기사는 한 형사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 아들이 차에서 내려 실종됩니다. 얼마 후 아들은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처벌 여론이 들끓자 검사는 아버지를 기소합니다. 그 자신도 사고로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는 검사는 아이의 아버지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을 합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집행유예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플리바게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합니다. 법은 집행되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선고 후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던 곳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기자는 아버지, 검사, 판사의 삶과 생각을 심층 취재해 법의 문제를 파고 들어갑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진실이 아니라 종합적인 진실을 추구한 것입니다. 반쪽 진실은 현실을 왜곡하지만 양면의 진실은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한국 언론계에서도 한쪽 면만 보여주는 보도를 넘어 양쪽 면을 모두 보여주는 보도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한국 언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속도보다 정확성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모두들 ‘단독 기사’에 목을 매지만 기껏해야 ‘10분짜리 단독’일 뿐입니다. 자극적인 제목보다는 차분하고 충실한 취재로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낚시성 기사’는 언론에 대한 불신만 높일 것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소속된 매체가 어디인지를 떠나 기자들의 순정(純情)을 믿고 싶습니다. 어떤 언론사에 들어갔든 직업 선택의 갈림길에서 기자로 살기로 마음 먹었던 건 언론의 이데아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론의 이데아란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실에 복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데아에 다가서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팩트를 향한 용기와 겸손함입니다. 용기. 지식산

업의 비밀은 용기에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이어 여론권력의 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좌(左)에서든, 우(右)에서든 몰려오는 여론의 쓰나미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 없이는 지식산업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갈릴레오의 한마디가 근대를 열었듯 “그래도 진실은 있다”는 기자들의 직업적 자존심이 21세기 지식산업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자신의 수첩에 적힌 취재내용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취재한 팩트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팩트들이 사회적 통념이나 정보제공자의 의도에 따라 변형된 건 아닌지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았는가. 선입견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논리 전개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반론을 충분히 듣고 기사에 반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허리를 굽혀 돌다리들을 두드려야 하는 건 여러 개의 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A란 사람의 진실과 B란 사람의 진실, 법적인 진실과 도덕적인 진실, 편한 진실과 불편한 진실, 세속적 진실과 종교적 진실. 그 진실들 가운데 진짜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기자들이 늘어난다면 한국 언론 주변을 유령처럼 어른거리는 비관론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제 봄입니다. 서로 다른 얼굴의 진실들이 어울려 꽃을 피울 때,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기자들의 건투를 빕니다.

피의사실공표죄

강화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글. 한위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I. 사법파동과 피의사실공표죄

1. 사법파동

‘사법파동’¹⁾이란 1971. 7. 28. 검사가 행정부에 비협조적인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청구사실 및 영장의 피의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판사들이 사법권독립의 침해를 이유로 대거 집단사표를 낸 사건을 말한다.

사건의 발단은 1971. 7. 28. 서울지검 검사가 당시 서울형사지법의 한 재판부가 반공법 위반 항소사건을 심리하면서 출장길에 변호사로부터 숙식비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판사들은 위 영장청구가 재판장 개인에 대한 비위수사가 아니라 당해 재판장 등 법원이 시국사건 등에서 무죄 선고를 많이 한 데 대한 보복으로 보아 크게 반발하였으며 나아가 검사가 당해 재판장에게 미행까지 붙인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한편,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의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였는바, 2차 영장까지 다시 기각되고 재재청구가 들어오자 판사들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여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마침내 1971. 7. 29. 서울형사지법 판사 39명의 집단사표를 시작으로 하루 만에 총 150여 명의 판사가 사표를 내었으며(당시 전국 법관 415명의 3분의 1 이상에 달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사들은 ‘사법권수호건의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회에서도 이를 문제 삼고 언론에서도 검찰의 처사를 맹비난하기에 이르러, 결국 같은 해 8. 1. 대통령이 나서 법무부 장관에게 판사들에 대한 수사중지 지시를 내리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하여 사과의 뜻을 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간곡

1) 이에 대하여는 法院史(법원행정처, 1995), 489면 이하 참조.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http://news.donga.com/3/all/20130515/55156431/1> 참조(2014. 3. 5. 접속).

한 당부에 따라 같은 해 8. 27. 재경 전체 법관 회의의 사표 철회 결의를 필두로 판사들이 사표를 철회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사법파동의 원인과 의의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를 다루려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도 모자랄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사법파동의 원인 중 하나인 검찰이 공소제기 전에 구속영장청구를 하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에 주목하여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피의사실공표죄 –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의 주체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이고, 또한 위 죄는 시간상으로 공판청구 전에 한하는데, 이는 공판이 청구되면 공개재판의 원리상 공소사실 역시 공개법정에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나라는 형법 제126조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법파동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보듯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공표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더욱 특이한 것은 지난 25년간 수백 건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소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²⁾ 이는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조각



1971년 7월 29일,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39명이 집단사표를 쓰고 있는 모습 (출처 : 한겨레, 「판사 친척 뒷조사에 형량지정까지」, 2005년 3월 7일자)



1971년 8월 27일, 사표 철회를 결의하고 있는 재경 법관회의 모습 (출처 : 동아일보, 「정권에 비협조 판사 구속하려 하자 150여명 집단사표」, 2013년 5월 15일자)

2) 경찰청의 피의사건공표죄 사건처리현황에 따르면 1994~2000년 사이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예가 단 1건 있다고 하며(이근우, “중간수사발표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죄 적용의 몇 가지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10권 1호(2006), 255면 주3) 참조, 실제 1989년부터 2013년까지 25년간 피의사실공표 사건은 총 432건 접수됐으나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489> 참조(2014. 3. 5. 접속).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가 수사기관이므로 같은 수사기관인 검사가 기소를 꺼리는 것이 그 한 원인이 되었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는 언론에 의한 여론재판으로 피의자로서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유죄로 단죄되어 버리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의사실공표죄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반대로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성이 있고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을 가중하므로 차라리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II.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1.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취지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 취지는 1953년 제정 당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부터 피의자인권보호가 강조된 점³⁾ 등에서 피의사실공표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형법조문의 체계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항목에 규정되어 있고, 피의사실공표로 인하여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 또한 부수적으로 보호법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⁴⁾

2.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

법규정상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신분범이다.

그러나 언론사 기자 등 수사관계자가 아닌 자라도 수사관계자를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한 경우에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⁵⁾ 이는 우리 형법 제33조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공동정범, 교사범, 중범)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불가피하게 공소제기 전 수사상황을 보도하려는 언론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하여 국민의 알 권리 내지 언론의 자유와 밀접히 관련될 수밖에 없다.

3)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53면(엄상섭 의원발언) 등.

4) 신정훈, “피의사실공표죄의 형법적 한계”, 비교형사법연구 8권 2호(2006), 174면.

5) 주석 형법각칙(1)(민병훈 집필 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300면; 김재윤,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법적 쟁점 고찰”, 언론중재 2010년 겨울호, 102면; 신정훈, 앞의 글, 177면 등. 반대 견해로는, 원혜옥, “수사과정에서의 범죄보도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법 8호(사법연구지원재단, 2009), 17면 참조.

3.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피의사실공표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위법성조각 여부를 판단함에 고려할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굳이 분류하자면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행위로서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⁶⁾은 피의사실공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이면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제시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의자인권의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두 법익의 균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⁷⁾

6) 위 판결은 피의사실공표를 이유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 판결에서 설명하여 제시한 법리는 형사상의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여부에 대하여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민사사건에 대한 위 판례이론을 형사상 피의사실공표죄에 적용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으로는, 이근우, 앞의 글, 269면.

7) 한편, 위 대법원의 입장에 비판적인 견해로는, 박혜진, “형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피의사실공표죄의 제문제”,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181면.

Ⅲ. 피의사실공표죄를 강화할 것인가

피의사실공표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⁸⁾는, 피의사실공표는 언론에 의한 여론재판으로 피의자로서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유죄로 단죄되어 버리므로 피의자의 인권을 치명적으로 침해하는 것인바, 피의사실공표죄가 형법상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지 아니하여 피의사실공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강화하여 피의사실공표행위를 근절하자는 입장이다.

피의사실공표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1)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가장 큰 원인은 검사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이를 편의대로 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피의사실공표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기소하게 하는 방안⁹⁾, (2)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사 상황을 공개하더라도 수사기관 공보담당자의 공식발표 외에는 모두 유죄로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하는 방안¹⁰⁾, (3)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을 대폭 높여서 피의사실공표를 억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1) 검찰에 의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우리 형사사법의 큰 틀인데, 피의사실공표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면 재정신청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¹¹⁾ 정도이지 함부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함은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고, (2) 공보담당자의 공식발표만 면책되게 할 경우는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등의 피의사실을 은폐할 경우 이를 보도할 방법이 없게 되고 나아가 언론이 수사기관의 공식발표만을 보도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3)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는 피의사실공표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Ⅳ. 피의사실공표죄 폐지론

한편,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을 통하여 범죄은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범인에 대한 공개

8) 주석 형법각칙(1), 앞의 책, 299면 등.

9) 김재윤, 앞의 글, 109면; 이근우, 앞의 글, 106~107면 참조.

10) 2013년경 국회에서는 경찰과 검찰 관서별로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해당 공보담당자가 수사와 관련된 사실의 공표업무를 담당하고, 이들이 발표한 경우만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발의된 바가 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86&aid=0002145993> 참조(2014. 3. 8. 접속).

11) 실제로 2011. 7. 18. 법률 제10864호에 의하여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개정되었다.

수배 등 범죄보도를 통하여 범죄수사에 국민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굳이 이를 입법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형법개정 당시부터 주장되기도 했고¹²⁾,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 기초과정에서도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성이 없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던바¹³⁾, 피의사실공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는, (1) 피의사실공표죄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그 자체 위헌성이 있으며, (2)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3) 수십 년간 1건도 기소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는데 정치적 공방의 대상만 되므로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¹⁴⁾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1) 국민의 알 권리 못지않게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의사실공표죄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2)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처벌조항이 있으며¹⁵⁾, (3)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지 실효성이 없다고 이를 폐지함은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비판이 지적된다.

V. 피의사실공표죄 어떻게 할 것인가

피의사실공표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의사실공표죄가 형법상 범죄로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의사실공표가 비밀비재하고 나아가 관행처럼 되어 있음에도 수십 년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범죄의 주체가 수사기관인데 그 기소를 맡은 검사 역시 같은 수사기관이어서 기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정신청제도 등을 활용하여 부당한 피의사실공표에 대하여는 기소를 사실상 강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등과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의사실공표의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12)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344면(변진감의원 발인)

13) 문성도, "경찰홍보의 형법적 한계-범죄수사발표행위의 피의사실공표죄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경찰대논문집 12집(2001), 175면 참조, 또한 단서규정으로서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별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위법성조각 사유를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시도가 있었지만, 논란 끝에 1995년 개정형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주승희,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검토-공개수배 및 검찰수사공보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153면.

14)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489> 참조.

15) 외국의 사례에 대하여는, 박혜진, 앞의 글, 163면 이하 참조. 이에 따르면, 독일 형법 제353조d 제3호는 "공소장, 기타 형사소송절차, 과태료부과절차, 징계절차에 관한 관청 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판에서의 낭독 또는 소송절차 종료 이전에 공연히 공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하며(위 글, 165면 주13 참조), 한편, 프랑스 신형법 제226-13조, 226-14조(구형법 제378조)은 "사실상 또는 직업상 비밀의 성격을 지닌 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를 공표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원혜옥, 앞의 글, 18면 주29 참조).

한편, 검찰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903호)¹⁶⁾을 제정하여 공소제기 전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의 공개를 금지하되(제9조 제1항),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사내용을 공개하되(제10조 제1항),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한하는 등(제13조 제2항) 공보의 방식과 절차,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 ‘고위공직자 등이 관련되거나 기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 또는 불특정다수인의 생명, 재산, 명예 등에 관계되는 중요사건에서 국민들의 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수사상황 등의 발표·공개는 일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¹⁷⁾이 발의되기도 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의사실공표죄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¹⁸⁾, 우리나라와 법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형법 규정이 없음은 물론, 일본 형법 제230조의2 제1항은 “전조 제1항의 행위(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련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이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공소제기 전의 범죄사실의 공표에 대한 처벌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언론매체들의 기본적인 과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국민적 관심을 끌 정도의 중요한 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하며, 나아가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인의 추적보도는 국민의 안녕에도 관계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언론매체들이 중요사건의 수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엄

16) 이에 대한 소개와 평가로는, 주승희, 앞의 글, 172면 이하 참조.

17) 이에 대한 소개 및 평가로는, 김재운, 앞의 글, 105~106면 참조.

18) 박선영, 언론정보법 연구 I, 법문사(2002), 293면; 신정훈, 앞의 글, 174면. 우리나라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비슷하다는 독일 형법 제353조 제3항도 어디까지 공소장 등을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 내용의 공표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프랑스 형법 역시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한 것일 뿐 피의사실공표를 특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앞의 주 13) 참조.

격히 적용할 경우 사실상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보도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정확한 추측보도를 부추기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소제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황에 대하여 공식발표를 하는 것이 당해 수사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오히려 더 요망될 수도 있다.¹⁹⁾

결국, 피의사실공표행위는 알 권리와 관계에 비추어 이를 무조건 처벌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특히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고, 명예훼손의 비형사화(非刑事化) 경향 등 세계적인 조류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피의사실공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피의사실공표죄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위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다수가 있다.

그렇다면 피의사실공표죄를 선불리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하거나 이를 폐지하기보다는, 피의사실공표가 남용되는 경우는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되, 피의자의 인권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함이 우선이라고 할 것이다.

19) 장영수,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한 오보와 면책범위", 언론중재 24권 4호 (2004.12), 27면.

댓글의 자유와 악플의 책임



글 박형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악성댓글, 즉 악플의 폐해와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악플에 시달리는 유명 연예인에 관한 댓글을 읽어보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선설과 성악설의 논쟁이 문득 생각난다. 악플들을 한발 떨어져 읽어봐라. 인간의 본성은 확실히 악하다. 성악설이 맞는 것 같다. 옛 성인들은 신독(慎獨)이라 하여 혼자 있을 때에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고 했는데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은 인간의 악성을 이끌어 내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이 무기명의 힘, 익명성이 지닌 매력은 인터넷을 발전시키는 힘의 원천의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오늘 그런 거대담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룬 형사고소사건과 판례 하나를 통하여 댓글의 자유와 한계에 대하여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요즘 악성댓글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명예훼손은 치기 어린 소년, 소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익명계시판에서 어쩌면 더 심하다. '닥플(<http://www.docple.com>)'이라

는 사이트가 있다. '닥터플라자'의 약어로 의사 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다. 이 닥플에 관련된 기사 몇 개의 헤드라인을 보자. 「여자의사회, '닥플' 익명계시판은 인격 살인의 장' 익명계시판 실명전환 및 피해 여의사들에 공개사과 요구」(2012년 1월 기사), 「닥플, 의사 사이버공간은 윤리적 진공상태, 충북의사회 성명...회원간 사이버테러, 언어폭력 재발방지 촉구」(2012년 4월 기사), 「서울중앙지법, 의사포털 닥플에 수색영장 발부, 김선민 의원 욕설글 게시판 6명 신분확인목적」(2012년 8월 기사). 이렇게 헤드라인만 뽑아도 짐작은 되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내가 직접 다룬 닥플에서 벌어진 의사들 사이의 분쟁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의과대학 교수인 친구가 의사들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글, 상업화하는 의사들을 비난하는 글을 신문에 썼다. 그러자 많은 젊은 개업의가 닥플 익명사이트에 그 친구의 글에 비분강개하여 모욕적, 명예훼손적, 신상털기의 글을 쏟아냈다.

근무하는 대학병원으로 전화도 빗발쳤다.



닥플 홈페이지(<http://www.docple.com>) 메인화면 (2014. 3. 20 접속)캡처

업무마비를 넘어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그 친구는 나에게 대처를 요청했고 내가 닥플에 내용증명을 보내 댓글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닥플 관계자는 다행히 즉각적으로 수용했고, 친구와 나는 글을 올린 사람 중에서 악의적인 글을 쓴 몇 명을 골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 그 후 몇 명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와 고소를 취하했고, 조직적인 몇 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고소를 유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게 했다.

내 친구의 의도는 닥플 익명사이트의 윤리적 진공상태를 바로 잡아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골만 깊어진 느낌이다. 의사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견해차, 대립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자신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 확신범(確信犯)이다.

그런데 이런 댓글과는 구별되어 과연 명예훼손인지 판단이 쉽지 않은 댓글이 있다. 사업장, 영업장에 대한 평가의 글들이 그렇다. 법률적

으로는 이러한 인터넷(정보통신망)에 올린 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이 되는지의 문제이다. 이 전파성이 높은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 산후조리원을 이용해보고, 비방한 사람이 기소되고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받은 사건(2012도10392호 판결)이 있다. 우리에게 좋은 기준을 제시하여 소개한다.

분쟁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후기를 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1년 12월 27일까지 250만 원을 들여 산후조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26일 6시 17분경부터 같은 달 30일 01시 29분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후기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한 글에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들의 신중한 산후조리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글을 작성한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온수 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음식의 간 등 피고인이 13박 14일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직접 겪은 불편했던 사실을 알리는

것이거나, 환불을 요구하며 이용후기에 올리겠다는 피고인의 항의에 피해자 측(산후조리원)이 "막장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다"며 이용후기로 산후조리원에 피해가 생길 경우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했다거나, 피고인의 이용후기가 거듭 삭제되는 것을 항의하는 것이다.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피고인의 글에 대해서 카페 회원들이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며 피고인과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지낸 카페 회원들이 신생아실에서 언성을 높인 피고인의 태도를 나무라기도 하는 등 활발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당신이 이 사건의 판사라면 피고인의 행위가 산후조리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겠는가, 아니면 이 정도의 비판은 허용할 것인가.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았다.

원심은 명예훼손으로 보았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재판부가 피고인을 우호적으로 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이용후기는 실제 산후조리원을 사용한 사람이 실제 겪은 일을 올린 것이고, 그에 더하여 주관적인 평가를 올린 글이었다.

둘째, 피고인이 당연히 불만이 있었으므로 과장은 존재하였지만, 그 인터넷에 올린 글은 상당 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였다.

셋째, 이용후기를 올리면서 동기를 명백하게 밝혔다. “내가 이 사이트를 보고 산후조리원을 선택했는데 사용하여보니 아니었다. 그래서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동기가 명확했다는 것이다.

넷째, 반복적으로 올린 것이 문제이나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다. 산후조리원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글을 삭제하니 계속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섯째, 만방에 비방의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유명 산후조리원 사이트나 피고인의 블로그에만 올려 그 정보를 보는 사람이 한정되었다.

여섯째, 모든 관계에는 궁합이 있는 것인데 산후조리원 입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곳의 서비스에 만족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에 이런 불만도 어느 정도 참아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후기가 산후조리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이용후기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과 의견제공 활성화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할 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 사유는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종합적인 판단이다. 결국 우리 대법원은 위의 기준을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의

손의 주요표지인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기준이 명확한 것 같지만, 실제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생각이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비방’이 주된 목적인지, 아니면 비방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사정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판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벌금을 각오한 댓글의 예를 들었다. 벌금 낼 각오를 하고, 악플을 올린다. 이들을 우리가 동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된다.

그렇지만 산후조리원의 우리 피고인처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비난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대법원이 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선의에 관심을 가져준 것이다. 따뜻한 시선을 가진 판결이라 생각한다.

탐정 :

조사(調査)와 결합(結合)



글. 김상순
변호사, 이화여대 로스쿨 겸임교수

연기자들의 세계는 그렇다 한다. 극에서 맡은 역할의 개성이 너무 강하면, 최선의 연기를 위해 몰입할수록 작품이 끝난 후 배우가 겪는 후유증이 생각보다 크다고 한다. 시는 시인이 그 시를 짓던 그 순간의 심정일 때, 가장 와 닿는다고 하던가. 마찬가지로 배우들은 실감 나는 연기를 하기 위해, 아니 극 중 인물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럴수록 연기는 자연스럽게 관객의 마음을 흠뻑 적실 만큼 실감 난다. 열연(熱演)은 그렇게 나온다.

배우만 그럴까. 변호사로서의 직업을 수행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다. 사건에 휘말려 사회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사람의 '변호인'이 되어, 무죄를 확신하여 도와주고 싶어지는 형사사건의 경우나, 그의 전 재산이 날아가지 않도록 '소송대리인'으로서 열심히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사건의 경우, 온 시간을 사건에 쏟는다. 명변론(名辯論)과 열연은 그 점에선 닮았다.

무죄든 청구기각이든 일단 결론이 나고 나의 직업적 역할이 끝난 경우에는, 의뢰인의 삶에서 이제 그만 나와야 하는데, 프로답지 않게 감정이 입혔던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다. 탈출 방법으로 손쉬운 것이 다들 그렇듯 술이다. 예컨대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폭탄주이지만, 최소한 들이키는 그 순간만큼은 신산(辛酸)한 '직업으로서의 법'과 잠시의 이별 순간이다. 건강을 위하여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스크린과의 만남인 '영화'이다.

극장이라는 제한되고 어두운 공간 내에서 실재 없이 집중을 방해하는 메시지와 메일을 피해 기꺼이 스마트폰을 끈다. 누군가의 인생을 다른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번갈아 지켜보며 두어 시간 전후 머물다가 나오는 것이다. 영화는 항상 누군가의 인생을 다룬다. 감독은 감독 자신의 눈으로 영화를 만들고 관객은 관객 자신의 눈으로 영화를 감상한다. 관객은 생활인과 직업인, 두 개의 관점을 번갈아 사용하며 영화를 지켜본다.

‘법률가의 관점에서 작성한 영화 리뷰’. 원고 청탁을 처음 받았을 때, 처음 들었던 계간 『언론중재』의 「Movie with Legal Mind」 코너에 대한 첫 설명이었다. 법률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바라본 영화. 즉, 직업인의 관점에서의 영화감상 후기를 요청받았다. 의상 디자이너라면 등장인물들의 복식(服飾)을 유심히 살필 것이고,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면 영화음악에 더 귀를 쫓긋 세울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가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영화 보기는 어때야 하는 걸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할 때, ‘법률가’란 ‘법률을 연구하여 법률의 해석, 제도, 적용 따위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의미하고, 같은 뜻으로 율사라 부른다 한다. 소송과정에서 법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흔히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 불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율사 직업군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법률에 접근한다. 재판이라는 절차에서 세 직업군은 만난다.

분쟁해결의 또 다른 이름인 재판절차는 ‘사실확정 단계’와 ‘법리적용 단계’ 등 두 단계를 거친다. 즉,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事實, fact)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렇다. 구체적 사실을 다루지 않는 규범은 공허하다. 증거 없는 재판은 자의에 불과하다.

산재해 있어 얼핏 의미 없어 보이는 사실들과 진술들, 물건들을 조사하고 관찰하여 의미를 부여하여 물증과 증인을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그 의미들을 결합하여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는 일. 재판에서는 이러한 사실확정이 매우 중요하다.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하고 각종 학문적 지식(예컨대, 의학, 약학, 해부학, 화학, 동물학, 곤충학, 약초학, 심리학, 기계공학 등등)을 이용하여 그 의미를 결합하여 증거로 만드는 첫 단계. 이번 봄호에선 그 첫 단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그 첫 단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탐정’이라 불린다. 그렇다. 탐정이 등장하는 영화 이야기를 하려 한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등장하는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분류코드 : 75330)’은, ‘개인 및 사업체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조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예시로 ‘홍신소, 사설탐정 서비스, 필체감정, 지문조사 서비스, 거짓말탐지기 서비스’를 적고 있다. 몇 번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아직 현행법상으로는 정면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사전적 의미로 탐정이란 직업은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홍신소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가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

● MOVIE WITH LEGAL MIND

행 따위를 몰래 조사하여 알려 주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을 말한다. 국어사전은 이 직업에 대해선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속의 대표적인 명탐정은 코난 도일(Conan Doyle)의 명저 『셜록 홈즈』다. 셜록 홈즈(Sherlock Holmes)는 그의 친구인 의사 왓슨(John H. Watson)과 함께 여러 사건을 해결한다. 『셜록 홈즈』는 탐정이야기의 전범이라 할 만하다. 아무렴, 탐정물은 어떤 형태로든 『셜록 홈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르거나, 비틀거나.

이 때문에 대부분 탐정영화는 주연인 탐정과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하는 조연인 친구가 등장한다. 직관, 탐지, 추리, 격투 등의 각종 기술요소를 분담하여 주연과 조연 캐릭터가 영화를 이끈다. 상대 역인 악역이 있고 주연의 이성 파트너가 등장한다. 악역 캐릭터가 생생할수록, 이성 파트너가 매력적일수록, 영화의 흥행은 가속도가 붙는다.

2009년 연말에 개봉된, 가수 마돈나의 전(前) 남편인 가이 리치(Guy Stuart Ritchie) 감독의 영화 『셜록 홈즈』. 마블 코믹스 동명의 만화를 영화화한 『아이언맨(Iron man)』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2009년 개봉한 영화 『셜록 홈즈』 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movie.naver.com])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Robert John Downey Jr.)가 명탐정 셜록 홈즈 역할을 맡았다. 그를 도와 사건을 함께 해결하는 왓슨 박사 역할은 영국 배우 주드 로(Jude Law)가 맡았다. 영국 의회를 장악하려는 악당으로 '블랙 우드 경'이 등장하고, '셜록 홈즈'의 이성 파트너 역인 '아 이런 애들러'가 등장한다.

이 영화는 같은 감독에 의해 2011년 연말에 후속작 『셜록 홈즈 : 그림자 게임』이 개봉되었다. 후속작에서는 한층 더 강력해진 악당으로 세계전쟁 유발을 꿈꾸는 '제임스 모리어티' 교수가 등장한다. 셜록 홈즈는 1편에선 영국을 구하고, 2편에서는 유럽을 구한다. 천재적인 상황판단을 하는 두뇌와 멋진 격투술을 펼치는 신체를 가진 영웅으로 등장한다.

시선을 중국으로 돌리자면, 당나라 때의 실존인물이라는 '적인걸(狄仁傑)'을 주인공으로 하는 중국 탐정영화가 있다. 2010년 연말 『적

인걸 : 축천무후의 비밀』이 국내에 개봉되었다. 그리고 2013년 가을 『적인걸2 : 신도해왕의 비밀』이 개봉되었다. 두 편 모두 서극(徐克) 감독이 만들었다.

적인걸 시리즈는 1편보다는 2편에 이르러서 좀 더 ‘셜록 홈즈’ 도식에 충실해졌다. 1편에서는 ‘적인걸’과 ‘사타충’의 대결구도였는데, 2편에서는 바뀌었다. 셜록 홈즈에 대응해서 ‘적인걸’이 주인공으로, 왓슨 박사에 대응하여 의공(醫工) ‘사타충’이 주인공을 돕는 조연으로, 악역엔 ‘곽사’라는 반당나라 세력이 등장한다. 악역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 시리즈로 나올 기세다.

우리나라는 2011년 연초에 개봉된 김석운 감독의 『조선명탐정 : 각시투구꽃의 비밀』. 개봉 당시, ‘조선명탐정’이라는 제목보다는 ‘각시투구꽃’은 무슨 꽃일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다. 이런 의문이 든다면 탄탄한 스토리를 가진 원작이 존재한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원작은 『열녀문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역사추리소설이다. 주인공인 명탐정役に 김명민, 주인공을 보좌하는 개장수役に 오달수가 등장한다. 이성 파트너라 할 한객주역을 한지민이, 악역 임판서역을 이재용이 맡았다.

주인공인 김명민의 극중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극중 내용은 다산 정약용을 연상케 한다) 캐릭터화, 브랜드화에 한계가 있는 점은 아쉽다. 작품명을 영문으로는 『Detective K』라고 쓰는 모양인데, 이름이 필요하다. 시인 김춘수의 말대로 부를 수 있어야 나의 꽃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어린 왕자』의 말따마나 그럴 수 있어야 비로소 나만의 장미꽃이 되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탐정 ‘캐릭터’의 부재는, 앞의 중국판 셜록 홈즈인 『적인걸』에 비교해도 아쉽다.

소설 『셜록 홈즈』는 영화 이외에도 TV 드라마 시리즈로도 만들어졌는데, 영국드라마 - 줄여서 ‘영드’라 불리는 - 마니아 층을 만들었고, 덩달아 주연 배우인 베네딕트 컴버배치(Benedict Cumberbatch)와 마틴 프리먼(Martin Freeman)의 인기도 더욱 높아졌다. 21세기판으로 극 중 시대 배경을 변경시켰지만, 원작의 캐릭터의 특징을 잘 지켰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메일과 스마트폰을 쓰는 현대판 셜록 홈즈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창조했다.



중국의 탐정영화 『적인걸2 : 신도해왕의 비밀』 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movie.naver.com))



조선을 배경으로 한 탐정영화인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movie.naver.com])

영화 『적인걸』 또한 TV 드라마 시리즈도 만들어져서 인기가 높다. 케이블 TV를 포함하여 우리나라도 탐정이 등장하는 여러 드라마가 제작됐지만, 이른바 ‘국민 캐릭터’라 부를 만한 지명도를 가진 탐정은 없는 듯 싶다. 일본에서 탐정을 다룬 소설 『비블리아 고서당의 사건 수첩』은 설록 홈즈의 구도를 비틀어 여성 탐정을 전면에 세웠다. 여주인공 ‘시노카와 시오리코’와 남자 조연 ‘고우라 다이스케’의 구도로 고서적을 둘러싼 사건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고, TV 드라마 시리즈로도 만들어졌다. 매회별 소재로 다루는 이름난 문학작품도 눈길을 끈다.

관찰력과 결합능력 등은 탐정뿐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중요하다. 민사사건이라면 의뢰인의 행간을 읽기 위해서 변호사는 뛰어난 관찰력을 가져야 한다.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인지

아닌지 의뢰인은 잘 모르기에, 법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형사사건이라면 피고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송기록에 등장하는 사건 현장을 때로는 수차례 직접 가 보아야 한다. 인적이 드물지 않은 곳이어서 유리한 증인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탐정영화에서 볼거리 중 하나는 극 중 배치된 여러 증거를 어떻게 결합하여 그 의미를 추출해내느냐이다. 결합과정이 기발하지만, 설득력 있을수록 몰입도는 배가 된다. 앞서 소개한 세 영화에서도 이를 다룬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한다. 관찰력과 직관력, 탐지력은 탐정뿐 아니라, 사법경찰관 및 검사에게도 중요하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가 정말 억울한지, 비상한 두뇌 회전으로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지, 적시에 파악해야 한다. 피의자 진술 불일치를 따져야 하고, 억울한 피고인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판단력은 판사에게도 중요하다. 다만,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증거법칙에 따른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유무죄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판사 개인의 관찰력과 판단에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다.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에는 이른바 ‘원님 재판’이 등장한다.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얼른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죄인을 하옥하라.”라는 ‘사또 나으리’의 대사가 나오는 전형적인 옛 재판이 등장한다. 형사소송의 발전단계에 관하여 강학상 등장하는 규문주의(糾問主義)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한 것을 ‘탄핵주의(彈劾主義)’라 부르고, 재판에 넘기는 주체와 재판을 하는 주체가 동일하여 집중된 경우를 ‘규문주의’라 부른다.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규문주의를 극복하고 탄핵주의의 방향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발전되었다.

사실관계 또는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다루는 영화는 아주 많다. 고전물에서는 ‘탐정’이, 현대물에서는 ‘과학수사팀’이 맡는다. 하지만, 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려면 역시 탐정이 제격이지만, 탐정영화는 체포 이전까지만을 다룬다. 어떻게 범인을 잡는지, 얼마나 범인과의 대결구도가 긴장감 있는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추리해내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범인 체포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영화에 관한 글을 쓰면서, 영화의 필수요소랄 ‘예고편’이 등장 않을 수 없다. 잘 만들어진 예고편은 관객 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조사, 관찰, 수집, 결합 등 사실관계의 확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번 여름호부터는 법리를 적용하는 역할을 맡은, 체포 이후 단계의 율사 직업군을 더 다룰 계획이다. ‘예고편’의 속성상, 아쉽게도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다. 여름에 볼 때까지 건강들 하시길 빈다.

설리번 판결 50주년과 언론의 자유 : 제1 수정헌법의 국제적인 영향



글: 염규호
미국 오레곤 대학교 Jonathan Marshall
제1 수정헌법 석좌 교수

미국의 제1 수정헌법은 어떠한 법도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언론 자유의 제한 금지가 절대적인 것일 수는 없다. 예컨대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개인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경우 무한정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수는 없다. 1946년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사 Felix Frankfurter는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자유 언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책임지는 언론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간결한 영어로 표현하면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고 있다. 비록 언론이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언론의 자유란 자유를 행사함에 따르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¹⁾

책임 언론과 자유 언론의 균형이라는 제1 수정헌법의 과제를 혁명적으로 다룬 판결이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이다. 이 기념비적인 언론 자유의 판결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이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서 연방대법원은 언론 자유를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천명했다. 즉 설리번 판결문을 쓴 William Brennan 판사는, “공적인 토의는 정치적인 의무이다. 이것은 미국정부의 본질적인 원칙이어야 하며, 이러한 토의는 정부나 공직자에 관한 격렬하고 신랄하며 가끔은 불쾌할 정도의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며, 결코 억제되어서는 안 되며, 활발하고 최대한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설리번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려는 기도를 가능한 한 방지하기 위해서 비록 허위라고 할지라도 ‘제1 수정헌법의 핵심적인 의미’에 따라서 그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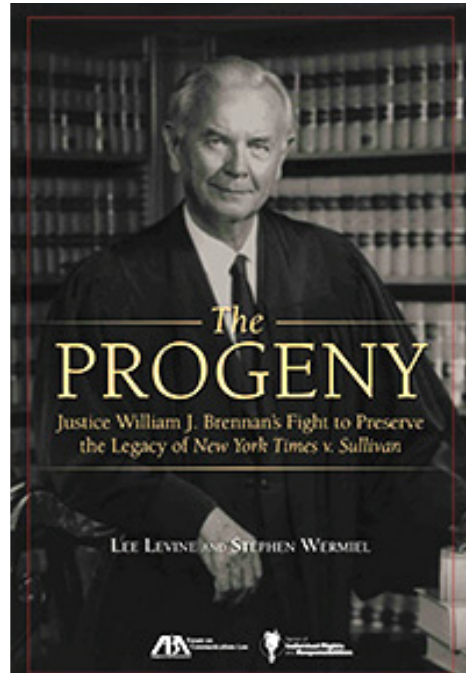
1) Pennekamp v. Florida, 328 U.S. 331, 356 (1946) (Frankfurter J., concurring).

은 보호된다는 언론의 자유 원칙을 확립했다.

뉴욕타임스는 설리번 판결 50주년에 즈음한 2014년 3월 8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언론 자유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편에 속하며 칭찬을 받을 만한 표본이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현재 미국의 언론 자유가 세계 최고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최근에 나온 ‘국경 없는 기자회’의 ‘201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미국은 180개 국가 중 46번째로 되어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무자비한 추적, AP통신사의 전화 통화기록의 비밀압류,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소환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 보도에 관한 미국의 언론 자유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과감하다. 국내외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상황하에서 기념하는 설리번 50주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다.

국가가 전쟁 등의 위기에 있을 때 언론 표현의 자유가 특히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되새겨 볼 때 더욱 그러하다.²⁾ 2월 미국변호사협회는 설리번 판결 기념에 맞춰 설리번 판결을 쓴 Brennan 판사의 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다룬 책, 『The Progeny: Justice William J. Brennan’s Fight to Preserve the Legacy of New York Times v. Sullivan』을 출판했다.

미국언론학회(AEJMC)의 언론법 학술지



Brennan 판사의 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다룬 The Progeny 표지(출처 : Newseum 홈페이지[<http://www.newseum.org/programs/2014/0326-institute/50th-anniversary-of-new-york-times-v-sullivan.html>])

인 『Communication Law & Policy』는 4편의 초빙논문을 설리번 판결 기념으로 특별호에 실을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변호사협회 언론변호사분과, Practising Law Institute, 조지아 법과대학, 앨라배마 법과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법과대학과 미네소타 언론대학 등이 설리번 기념행사를 작년과 올해에 주관했다.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설리번 기념 학술포럼이 시애틀, 몬트리올과 싱가포르에서 올해 5월, 7월, 8월에 열릴 예정이고 10월에 오레곤 언론대학과 법과대학이 공동

2) Kyu Ho Youm, 'Freedom of Press Tumbles in Ratings', Register-Guard, Mar. 16th, 2014.

주관하는 설리번 기념회의가 계획 중에 있다.

필자는 설리번 판결 40주년이었던 2004년에 계간 「언론중재」 여름호에 「설리번 판결과 미국의 언론 자유: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 원칙의 40주년을 맞으면서」라는 논문을 기고한 바 있다. 2004년 글의 서문에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관련성은 있으나 지면 관계상 다룰 수 없는 것이 설리번 사건이 외국의 명예훼손법이나 법원 판결에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에 관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설리번 판결이 국제적으로 점점 인정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거부당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필자는 또한 설리번 판결의 국제적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문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약속했다. 50주년을 기념하는 필자의 설리번 판결에 대한 이 글은 2004년의 후속 편인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설리번 판결을 중심으로 제1 수정헌법이 외국과 국제법에 끼친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³⁾

1. 설리번 사건과 제1 수정헌법의 ‘재탄생’

국방성 기밀문서 폭로사건, 워터게이트 탐사 보도 그리고 정부기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의 거침없는 비판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설리번 사건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제1 수정헌

법을 상징적으로 ‘재탄생’ 시킨 이 연방대법원 판결은 1960년대 초의 미국 인권운동의 와중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으로는 민권 탄압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표적으로 한 소송사건이었다. 1960년 3월 말에 마틴 루터 킹 변호위원회는 “그들의 커가는 목소리에 주의하라(Heed Their Rising Voices)”라는 사실광고를 뉴욕타임스에 실었다. 이 전면 광고는 몽고메리시 경찰로부터 남부 흑인 학생들이 겪은 학대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다. 다만 몇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오류들이 그 주장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인 몽고메리시 경찰국장 L. B. 설리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타임스에 광고철회를 요구했고, 타임스는 이 요구를 거부했다.

설리번이 받은 50만 달러의 주배심원 판



마틴 루터 킹 변호위원회가 뉴욕타임스에 실은 사실 광고(출처: ABA저널, 「March 9, 1964: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Decided.」, 2012년 3월 1일자)

3) 이 글은 필자가 기고한 Communications Lawyer, 2004; Journal of International Media & Entertainment Law, 2012; Communication Law & Policy, 2014에 발표한 논문을 참고했음을 밝혀 둔다.



New York Times v. Sullivan (1964) 사건 원고인 몽고메리시 경찰국장 L. B. Sullivan(출처 :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 블로그[<http://law2.umkc.edu/faculty/projects/trials/conlaw/commonlaw.htm>])

결을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타임스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앨라배마법원이 적용한 명예훼손법에 대해 “공직에 관한 행위를 비판한 사람들에 대해 공무원이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경우, 제1 그리고 제14 수정헌법이 요구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여건을 제공치 못함으로써 헌법상 불충분하다.”고 연방대법원은 결정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법은 헌법적인 제한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제1 수정헌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기준에 입각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에는 틀린 언사가 불가피한 것”이고 “모든 사실적인 오류로 인해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담화는 약화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새로운 판결원칙을 선언했다. “본 법원은

(언론 표현 자유의) 헌법상 보장으로 다음과 같은 연방 기준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즉, 자기의 공적인 행위에 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원하는 공직자는 문제된 명예훼손적인 언사가 ‘현실적 악의’(즉, 그 언사가 허위인 것을 인지하고 있거나 그것이 허위 유무를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고서)를 갖고서 행해졌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현실적 악의의 증명은 ‘신빙성 있는 명확성’에 입각해야 하며 이는 피고가 문제의 언사가 거짓임을 알고 있거나 진실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갖고 있었음을 뜻한다. 단순한 보도상의 실수나 태만은 공직자가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증명해야 하는 현실적 악의로 충분치 못하다. 설리번 판결로 인해서 명예훼손법은 일대 변혁을 겪어왔다. 공직자로부터 시작된 현실적 악의는 공직과는 관계 없는 공적 인물(public figures)로 확대 적용되었다. 여기에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그리고 사회운동가 등이 포함된다. 명예훼손적인 언사가 허위이며 현실적 악의가 개입되어 있다는 증명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해야 한다. 현실적 악의의 요건은 명예훼손적인 주제가 공적인 혹은 사적인 관심사가 또한 중요 이슈가 된다. 현실적 악의 적용에 있어 피고가 언론사인가 비언론사인가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를 피해왔다. 올 1월 제9 순회 연방고등법원은

연방대법원과 연방고등법원이 내린 13개의 판결을 분석, 언급하면서 “피고가 전통적인 언론사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이해 상충적인 고발보고를 하거나, 단순히 타인이 쓴 기사를 취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사의 양쪽을 취재하는 훈련받은 기자인가의 문제에 제1 수정헌법의 보호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발언자의 신원이 누구냐가 아니라 원고가 공인인가라는 신분과 문제된 연사의 공적인 중요성이 제1 수정헌법 보호의 시금석이다.”라고 판결했다.⁴⁾

설리번 사건은 사적 인물이 관여된 명예훼손 소송에도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1974년 연방대법원은 비록 사인은 공적 인물에 비해서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를 더 받아야 하지만 엄격책임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인은 실질적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최소한 피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추정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현실적 악의의 입증 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문제된 명예훼손 허위보도가 공적인 주제에 관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각 주법에 따라서 최소한 과실 이상의 입증기준을 부과함으로써 제1 수정헌법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균형 있게

보호하도록 했다.⁵⁾

설리번 사건을 명예훼손법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 새로운 대폭적인 변혁을 명예훼손법에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특히 Brennan 판사가 설리번 사건을 단순한 명예훼손으로 보았다면 타임스의 상고를 기각했을 것이고 허위적인 명예훼손적 언사는 제1 수정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전통적 헌법해석을 적용했을 것이다. 또한 타임스의 사설 광고는 공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아니라 상업적인 표현이라고 봄으로써 언론 표현의 보호를 거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주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간단히 앨라배마법원의 판결을 존중함으로써 연방헌법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쉽게 (물론 판결에서 판시했지만) 원고 설리번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타임스의 의견 광고는 설리번의 명예훼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을 것이다.

이미 시사한 것처럼 Brennan 판사는 설리번의 명예훼손 소송을 일개의 언론사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른바 선동적인 명예훼손죄(seditious libel)로 처벌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간파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제1 수정헌법의

4) *Obsidian Finance Group, LLC v. Cox*, 9th Cir., Jan. 17th, 2014.

5)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1974). 보다 상세한 설리번 현실적 악의 등에 대한 설명은 Kyu Ho Youm, 'Defamation' in *Communication and the Law* (W. Wat Hopkins ed., 2014)를 참조.

‘핵심적인 의미’, 즉 민주주의는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언론 표현의 자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결의 초점으로 하게 되었다. 설리번 판결은 미국 언론으로 하여금 보다 과감하게 남부의 인종차별과 민권운동을 보도할 수 있게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흑인 등의 참정권이 확대되었으며 설리번 사건은 미 언론의 탐사보도를 보다 현실화 했다. 한편 설리번 사건의 영향은 미국 내의 정치, 법 언론 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설리번 판결은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명예훼손법에서뿐만 아니라 민주 사회로의 변화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이다.

II. 설리번 판결의 국제, 비교법적 영향 : ‘현실적 약의’를 중심으로

제1 수정헌법이 예전보다 국제적인 영향을 떨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는 세계에서 너무 ‘예외적(exceptional)’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명예훼손과 증오 표현에 대한 미국법은 좋은 예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언론법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이런저런 관련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저명한 미국 헌법학자 Rodney A. Smolla 교수의 말을 길게 인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언론의 자유 경험은 세계 국가들에게



미국의 헌법학자인 Rodney A. Smolla Duke University 로스쿨 교수(출처 : Washington & Lee University School of Law 홈페이지[<http://law.wlu.edu/faculty/profiledetail.asp?id=238>])

중요하다. 미국의 제1 수정헌법의 현재 정책들이 반드시 현명하다고 하는 이유는 아니다. ... 사실 모든 곤혹스런 언론 자유 문제를 미국인들이 ‘올바르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세계의 사람들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자유 언론에 관한 분쟁과 커뮤니케이션 정책 등과 분투하면서 쌓은 우리들의 경험이 놀랄 정도로 풍부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해답을 미국 사회가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이 문제 등을 보다 많이 생각했다. 제1 수정헌법을 통해서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탄압보다는 공개하는 실수가 더 좋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번번이 실험해 왔다. 비록 (언론을) 탄압하는 일반적인 주장이 유혹

적으로 보일지라도 말이다.⁶⁾

설리번 판결의 국제적인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여러 국가의 입법이나 판결을 통해, 지역 인권재판소의 판결과 국제재판소의 결정 등에서 설리번 사건은 자주 인용되고 있다. 3월 13일에 필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헝가리의 헌법학자 András Koltay 교수는 3월 4일의 헝가리 헌법재판소 판결에 미국의 연방대법원 명예훼손 판결 3개를 인용하면서 설리번 사건을 언급했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확장한 영국의 2013년의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은 제1 수정헌법의 직접적인 영향의 결과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리번 사건을 모델로 해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⁷⁾

필리핀은 설리번 사건의 현실적 악의를 그대로 직수입한 가장 좋은 예다. 1999년 필리핀 대법원은 현실적 악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악의적이라고 보려면(공직자나 공적 인사에 관한) 명예훼손적인 언사가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거나 허위이나 아니냐를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고서 쓰였거나 발행되었음이 확실함을 증명해야 한다. 허위인가 아닌가의 무모한 정도의 무시라는 것은 피고가 명예훼손적인 글의 진실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거나 허위의 상당성을 고도로 인지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⁸⁾ 필리핀 대법원은 현실적 악의는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언론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시했다. “진실하게 믿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언론사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은 물론 정직한 실수나 완벽치 못한 실수를 이유로 해서 억압을 느낄 정도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언론사에 많은 여지와 관용을 주는 것만이 우리 민주국가에 있어 비판적인 기관으로서 용기 있게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필리핀 대법원이 설리번 사건의 현실적 악의를 받아들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정치, 문화, 경제 등에 대한 긴밀한 관계와 영향은 과거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설리번 사건에 대한 필리핀 대법원의 입장은 당연하다.

현실적 악의의 국제적 수출의 흥미로운 케이스는 아르헨티나의 경우이다. 1987년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비록 현실적 악의를 분명하게 다룬 것은 아니지만 설리번 사건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언론법 판결 등이 아르헨티나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해석하는 데 연관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현실적 악의 원칙처럼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사적 인물과 공적 인물의 구분, 언론사를 얼마만

6) Rodney A. Smolla, *Free Speech in an Open Society* 347 (1992)

7) *Blackstone's Guide to the Defamation Act 2013* (James Price & Felicity McMahon eds., 2013)

8) *Borjal v. Court of Appeal*, 301 SCRA 1 (1999)

컴 접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즉, 사적 인물은 공적 인물에 비해서 허위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언론사 이용 기회가 적으므로 명예훼손에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명예에 대한 언론의 공격으로부터 광범위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⁹⁾ 1991년 현실적 악의를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확실하게 적용했다. 명예훼손적인 뉴스보도에 관한 '공적 인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공공의 관심이 있는 문제에 관련된 정보를 언론사가 전파하는 경우에 언론사의 민·형사 책임은 1) 문제의 정보가 허위이거나 2) 정보가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보도되었거나 혹은 시간과 방법이 있으면서도 공적인 연사의 진실이나 허위를 조사하려는 관심이 전적으로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¹⁰⁾ 미국처럼 아르헨티나에서도 현실적 악의의 입증책임은 공적 인물인 원고가 지며,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 악의의 범위가 미국보다 넓다는 것이다. 예컨대 명예를 해할 범법적인 의도가 있음을 요구하며, 공적인 논란에 관계된 '여타 사람들' 포함함으로써 사적인 인물도 그 현실적 악의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현실적 악의를 인정한 외국들과는 특이하게 현실적 악의보다 더 언론기관을 보호하는

'중립보도특권' 원칙을 미국법으로부터 채택했다. 1977년 미국 제2 순회 연방고등법원이 수립한 중립보도특권은 공적 인물에 대한 뉴스가치가 있는 명예훼손적인 주장을 책임 있고 혹은 명망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하는 경우 이 주장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다시 발표하면 법적인 책임을 언론사가 지지 않는 것이다.¹¹⁾ 현실적 악의와는 달리 중립보도특권은 허위의 인식 등에 관련 없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주장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뉴스보도로서 보호하자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¹²⁾ 1986년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이른바 'Campillary' 원칙으로서 명예훼손적인 인용보도의 면책특권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기자나 언론 발행인이 문제된 내용의 소스를 분명히 밝히거나 그 내용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¹³⁾

헝가리의 현실적 악의는 법 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판결을 통해서 인정되었다. 개념적으로 그리고 적용면에서 볼 때 미국의 법과 흡사하다. 그러나 증거책임과 취재요구 등에서 차이가 있다. 1994년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사건에서 공적 인물과 공직자는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9) Argentina Supreme Court of Justice, Fallos: 310:508 LA Ley-1987-B269 (1987).

10) CSJN 19/11/1991 'Vago, Jorge A. c. Ediciones la Urraca S.A y otros', 314 Fallos 1517 (Arg).

11) Edwards v. National Audubon Society Inc., 556F 2d 113 (2d Cir. 1977).

12) 앞에 언급한 Kyu Ho Youm, 'Defamation'을 참조.

13) Eduardo Bertoni, 'Argentina Supreme Court Protects Online Reposting Intermediary Liability Doctrine: Same Wine in New Bottle', Oct. 31st, 2013.

판결했다. 그리고 공직자와 정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232조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명예훼손을 형벌로 할 수 있지만, 정부기관이나 정치인 등의 공적인 활동에 대한 비판자의 표현의 자유는 보다 넓어야 한다고 했다. 설리번 원칙을 수정해서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정부기관, 공직자 혹은 정치인에 대한 의견과 사실적 주장을 구별하면서 이렇게 판시했다. “정부기관이나 공무원 혹은 공적인 것, 정치인의 공적인 지위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가치판단은 헌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부기관이나 위에 언급한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적인 언사나 소문 혹은 그런 사실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은 오직 사실과 소문 그리고 그런 사실을 직접 언급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의 언사의 핵심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거나 직업상 요구되는 원칙에 따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생긴 경우에만 처벌할 수가 있다. 여기에는 주제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매체가 관여된 것인지 그리고 관여된 표현에 대한 시청자나 독자가 누구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 악의에 관련한 직업적인 주의 기준에 대해서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1967년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인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 (1967))에 쓰인 John Marshall Harlan 판사의 복수의견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미

국과는 달리 피고가 현실적 악의의 부재 입증을 책임지고 있다. 새로운 헝가리 민법은 설리번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언론사에 대한 중립보도특권도 인정하고 있다.

타이완도 헝가리처럼 현실적 악의를 형법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확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에 적용되었다. 1997년 타이페이 지방법원은 기자 등에 대한 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다. 이유는 타이완 여당의 고위인사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기사의 선량한 의도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홍콩 주간지에 실린 기사가 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의 시작이었는데 원고는 타이완에서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다뤘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타이페이의 지방법원 판사는 신문기사의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로서 일반 사람들의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기자들은 탐사취재를 통해서 기사를 준비했으며 원고의 명예를 해할 악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판사는 또한 그 신문기사가 형법상의 본질적 형벌 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주목했다. 그 이유로는 “원고에 대한 주장이 상당한 취재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되었으며 따라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기사는 ‘공적인 관심사’를 다루고 있으며 피고는 기사의 진실을 믿었고 원고의 명예를 저해할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¹⁴⁾ 라는 사실을 들었다. 이 타이페이 지방법원

14) Liu Tai-Ying v. Wang Shu-yuan, District Court, Taiwan, Apr. 22nd, 1997.

판결은 타이페이 고등법원에 의해 2001년 받아들여졌다. 타이완이 설리번 판결원칙의 형법적용과 관련해 처음 언급한 것은, 뉴욕타임스와 AP통신사를 포함한 10개의 주요 미국 언론사가 법정 조연자(amicus curiae)로 참여해서 타이완 형법의 문제점을 국제인권 원칙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는 사실이다.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가 자기의 기사가 진실임을 성실하게 믿고 있다면 비록 기사가 허위라고 결정된다고 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필리핀, 아르헨티나, 헝가리 그리고 타이완 이외에도 설리번 원칙을 수용한 나라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당수가 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의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등은 미국의 현실적 악의보다 더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이 나라의 명예훼손법은 “허위적인 사실표현이 정치적 혹은 공적인 관심에 관한 것이면, 그 표현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거나 사실을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고 행동하는 경우 명예에 해를 입힌 사람은 그 표현을 행했거나 전파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¹⁵⁾ 라고 되어 있다.

설리번의 영향은 개별국가법에 국한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국제법 특히 지역 인권재판소인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IACHR)와 유럽인권재판

소(ECHR)는 설리번 판결을 이용해서 언론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켜 놓았다. IACHR은 지난 4~5년에 걸쳐서 명예훼손 책임의 법적 기준으로 현실적 악의를 점진적으로 인정했다. 2008년 IACHR은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다루는 것이 반드시 미주인권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을 형벌로 처벌하려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문제된 명예훼손적 의견을 표현한 사람의 행동이 극단적으로 심각한 것
- 표현한 사람의 현실적 악의
- 불공정한 명예에 대한 피해의 성격
- 그리고 형사상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여주는 다른 정보가 있는가의 여부¹⁶⁾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죄적인 입증책임은 소송의 원고가 지게 되어 있다. 2009년 파나마가 관계된 IACHR 사건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이 적용된 바 있다. 파나마 법무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언사의 허위를 알고 있지 못한 변호사 피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IACHR은 공직자의 명예보호와 공직자의 행위를 알아야 할 시민들의 ‘최대’ 권리에 대해 ‘확립된’ 국제법을 언급하면서 “공직자는 자발적으로 사회적 통제를 받을 것을 인정하

15) Law on Protection Against Defamation of the Federation of Bosnia and Herzegovina, art. 6(4) & (5) (Oct., 2000).

16)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May 2nd, 2008.

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사적 인물과는 다른 명예보호기준이 적용된다. 공직자는 명예훼손의 위험이 보다 크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위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영향력과 자신이 참여한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언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IACHR은 명예를 보호함에 있어 법원은 민주사회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가치를 염두에 두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III. 설리번 판결 : 21세기 사상의 공개시장을 위한 국제화

미국의 언론법, 특히 설리번 판결이 세계의 법조인이나 언론학자 등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만큼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이 미국 중심적인 오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천부적 인권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국가 간의 물리적인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21세기의 디지털 정보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사례 깊은 미국의 법학자 Timothy Zick 교수는 “좋아하던 싫어하던 우리는 문화와 법제도 등이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외국의 공직자나 시민들은 제1 수정헌법의 이론과 원칙 그리고 규범을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상호 관련된 세

계에 이것들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¹⁷⁾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실적 악의의 국제적 가치는 실질적으로 못지않게 영감적인 것이다. 현실적 악의라는 기준보다는 제1 수정헌법을 대표하는 참여 중심적인 민주정신이 세계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리고 설리번 판결은 세계 여타 국가들에게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를 재조정하는 중요한 참고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다.

2010년 나미비아 대법원이 언명한 것처럼 많은 국가들이 설리번 사건을 받게 했던 자유 언론에 관한 문제들에 함께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설리번 판결의 정신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캐나다 대법원도 관습법 민주국가들은 대부분 명예보호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할 권리에 찬동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 등의 명예훼손법이 “언론 피고인 등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보호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판결했다. 설리번 판결이 국제적으로 점점 긍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986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는 정치지도자들의 사고와 태도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고 형성케 하는 최고의 방법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토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개념에서 가장 핵심이다. 비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하는 한도는 사

17) Timothy Zick, *The Cosmopolitan First Amendment* 20 (2014).

적인 인물에 비해서 정치인에 대해서는 넓어야 한다. 사적인 인물과 달리 정치인은 자기의 모든 말과 행동이 언론인이나 일반 대중으로부터 가까이에서 감시받고 있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치인은 보다 많은 인내를 갖고 임해야 한다.”¹⁸⁾라고 언급했다. 물론 유럽인권 재판소의 판결은 정치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Brennan 판사의 판결문과 다름없으며 설리번과 여타 다른 미국 명예훼손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설리번 판결 적용과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한 ‘중립보도특권’은 현실적 악의보다 더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면책특권이다. 매우 특이한 것은 영국, 캐나다 그리고 스페인은 아직 현실적 악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지만 중립보도특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왔다. 중립보도특권을 처음 세운 미국에서는 사실상 이 명예훼손 면책특권은 현재로서는 사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지난 10년 동안에 걸쳐 미국의 법원은 중립보도특권을 거의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다. 2001년 미국의 판결에 근거해서 인정된 영국의 중립보도특권은 현재 굳건히 영국법에 자리 잡고 있다. 2006년 영국 최고법원에서 언급되었

고 2013년 영국의 명예훼손법에 인정되고 있다. 캐나다 대법원은 2009년 ‘책임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란 명예훼손 면책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중립보도특권을 포함했다.¹⁹⁾

그리고 스페인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중립보도를 인정하는 나라이다. 2000년 스페인 대법원은 미국법을 그 기원으로 분명하게 밝히면서 “관련된 제반 사실들의 그 바탕이 미국판례법인 ‘중립보도’ 혹은 ‘중립정보’ 이론에 모두 들어맞는다. 이 이론은 뉴스 기사는 어떠한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 자료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면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한할 수 없는 정보의 자유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겠다.”라고 판결했다.²⁰⁾ 중립보도특권의 인정이 현실적 악의를 배후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비록 중립보도특권을 수용한 국가들이 이 명예훼손 면책특권의 근거를 미국의 판결에서 수입 적용하고 있지만, 현실적 악의에 근거한 것보다는 언론 보도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설명은 영국, 캐나다, 스페인 등 나라들이 언론의 자유에 우월적인 보호를 주려는 경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 보호의 일반적인 관행, 즉 언론은

18) Lingens v. Austria, 8 E. H. R. R. 407, 418-19 (1986).

19) Grant v. Torstar Corp., [2009] S. C. C 61: 이 기념비적인 캐나다 대법원의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한 상세한 배경기사는 Ivor Tossell, ‘The Story Behind the Rob Ford Story’, The Walrus, Mar., 2014 참조.

20) Miguel Martín-Casals & Josep Sole Feliu,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Against Invasions by Mass Media in Spain” in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Against Invasions by Mass Media 294-95 (Helmut Koziol & Alexander Warzilek eds, 2005).

뉴스보도 자체에 직업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원들이 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론적으로 중립보도특권은 사상의 자유 공개시장에 부합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뉴스 미디어 보호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개된 민주사회를 그 중심 가치로 이해하는 국가들의 선택이기도 하다. 현실적 악의라는 최대한의 명예훼손 면책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해서 무용지물처럼 배척당하는 미국과는 달리 현실적 악의가 아예 없는 법 체제에서 중립보도특권을 통해 객관적 보도관행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확장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설리번 판결의 국제적인 수출은 최근까지 소극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법의 언론 자유에 대한 전통과 권위 등을 외국에서 인정해 왔다는 결과였다. 그러나 미국은 적극적인(?) 현실적 악의 원칙을 외국에 요구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른바 약어로 ‘SPEECH Act’라는 법을 미국 의회는 2010년에 통과시켰다. 원래 법 이름은 Securing the Protection of our Enduring and Established Constitutional Heritage Act이다. 주목적은 미국의 제1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한 명예훼손 면책 등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언론사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외국의 명예훼손법을 적용할

속셈으로 외국의 법원에 소송을 하는 이른바 ‘명예훼손 관광(libel tourism)’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SPEECH Act에 따라서 외국의 명예훼손 판결이 제1 수정헌법을 위반하면 미국법원은 그 판결을 집행 할 수가 없다. 이 법에 대한 비판으로는 특별한 법적인 문제도 아닌 명예훼손 관광을 SPEECH Act를 통해 미국법을 외국에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²¹⁾ 그러나 이 법의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앞서 잠깐 언급한 2013년의 영국 명예훼손법이 이 미국법의 반동으로 제정되었다. 2013년 9월 미국 제5 순회 연방고등법원은 SPEECH Act에 따라 캐나다의 명예훼손 판결집행을 금지했다. 그 이유에 대해 캐나다는 미국헌법과 미시시피 주법에 상응하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며 또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미시시피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인 미국인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연방고등법원은 말했다.²²⁾ 이 같은 SPEECH Act 판결은 명예훼손 관광을 억제하고 미국에서 집행할 수 없는 외국의 법원판결은 아무 쓸모없는 시간과 돈의 낭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SPEECH Act는 설리번 사건에 반영된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두려움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사상의 시장을 보다 국제적으로 실현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다. 가장 영향력 있는 제1 수정헌법학자인 컬럼비아대학교 총장

21) Harry Melkonian, *Defamation, Libel Tourism, and the SPEECH Act of 2010* (2011).

22) *Trout Point Lodge, Ltd. v. Handshoe*, 5th Cir., Sep. 5th, 2013.

Lee C. Bollinger는 그의 2010년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파했다. “점점 더 상호 관련된 국제사회에서 언론의 검열은 어느 곳에서 행해지든, 장소를 불문하고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점을 바로 설리번 사건에서 파악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자행되는 검열의 국제적인 억제효과를 이해하고 새로운 세계적 토론장을 위해서 미국의 국민적인 토론에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했던 설리번 사건의 의미를 반복할 노력이 필요하다.”²³⁾

IV. 요약과 결론

설리번 판결은 지난 50년간 미국의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상징이었다. 억제보다는 보호를, 특히 정치적, 공적인 표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시민 비판자’의 언론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미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심어 주었다. 군림하는 정부가 아니라, 언론과 시민의 감시를 정치의 불가결한 메커니즘으로 가능케 한 것이 설리번 사건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설리번 판결은 크게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적게는 미국민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재탄생시켰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최대한의 비판 자유가 최소한의 자유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헌법적인 방법으로 ‘현실적 악의’를 선택한 것은 혁명적이

었다. 국제 비교법적 관점에서 설리번 판결의 철학과 이론 그리고 그 의미는 오랫동안 미국의 정치사회 문화에서 나온 예외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20~30여 년에 걸쳐서 설리번 사건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넘어서 국제적인 민주사회 명제의 틀을 제공했다. 현실적 악의 원칙이 예외적인 미국 명예훼손법일 뿐이라고 더 이상 말할 수는 없다. 비록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현실적 악의를 입법이나 판결에서 숙고한 여러 민주국가들은 예외 없이 정치나 공적 인물 그리고 주제들에 대한 언론 표현의 자유를 넓히려 했다. 현실적 악의를 채택한 국가 중에는 미국에서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국가의 법 사정에 맞게 조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법보다 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21세기 국제적인 언론 표현의 자유에 있어 독보적인 언론 보호국이라는 미국의 위상이 도전 받고 있다. 물론 고무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자유의 확대, 신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관점에서 설리번 판결의 국제적 영향을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앞으로는 외국으로부터 배우고 수입할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23) Lee C. Bollinger,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A Free Press for a New Century* 113 (2010).

상상하는 역사의 양날 - 역사드라마의 허구, 그 경계선은?



글 양동복
나시렛대학교 방송미디어학과 교수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드라마 중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역사적 실존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는 50편이 넘었다. 연간 약 4편이 방송된 셈이다. 일반적으로 역사드라마는 제작비가 더 많이 들고 제작하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닌데도 지속해서 제작돼온 이유는 우선 시청률이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드라마를 통틀어 역대 평균 시청률 20위 안에는 <허준>, <대장금>, <주몽>, <태조 왕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순간 최고시청률 40%를 넘게 기록한 역사드라마는 이 네 작품 외에도 <여인천하>, <용의 눈물>, <왕과 비>, <선덕여왕>, <장희빈> 등 상당히 많다.

역사드라마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드라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상상 속에

서나 존재하는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을 법한 것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드라마는 실제 현실보다 더 현실같이 그려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간의 제약이 있는 방송의 특성상 드라마는 삶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일부를 두드러지게 보여 주는 데다가, 또 시청자의 흥미를 북돋우기 위해 갈등구조를 만들려면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과장하게 된다. 실제 삶에서는 별다른 감흥 없이 지나칠 것 같은 내용도 드라마 안에서는 말 그대로 '극적(dramatic)'으로 표현된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인물에 대해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며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썼다고도 말한다. 즉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가 바로 드라마인데, 더 진짜 같은 현실의

소재는 바로 실제 일어났던 일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실화는 드라마의 좋은 소재가 되는데, 역사야말로 그 실화 중의 실화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은 드라마의 가장 좋은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인물은 대부분 극적인 삶을 산 경우가 많다. 그랬기 때문에 기록에 남을 수 있었다. 특히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시대로 거슬러 갈수록 이름이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들은 더 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므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록에 남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엔 보통 허구가 가미되어 남겨진다. 예를 들어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상당수가 신화의 형태로 전해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런 점에 비춰볼 때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극적 효과를 기본적으로 안게 되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청률이 높은 이 역사드라마에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역사적 인물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드라마의 여러 가지 장치, 즉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과장하여 묘사하고, 허구의 인물과 같등하거나 기록에 없던 사실을 행하게 되는 내용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장치가 좁게는 관련 가족이나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고, 넓게는 역사적 가치관을 흐트러 시청자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기황후> 역시, 높은 시청률만큼 논란이 많다.

<기황후>는 2013년 가을에 시작된 드라마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고 방

2000년 이후 실존 역사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역사드라마

시대	드라마
삼국시대까지	주몽(2006), 태왕사신기(2007), 바람의 나라(2008), 왕녀 자명고(2009), 김수로(2010), 근초고왕(2010), 광개토태왕(2011)
통일신라 후삼국	해신(2004), 서동요(2005), 연개소문(2006), 대조영(2006), 선덕여왕(2009), 계백(2011), 대왕의 꿈(2012), 제왕의 딸 수백향(2013), 칼과 꽃(2013)
고려	태조 왕건(2000), 제국의 아침(2002), 무인시대(2003), 신문(2005), 천추태후(2009), 무신(2012), 대풍수(2012), 기황후(2013), 정도전(2014)
조선	천둥소리(2000), 소설 목민심서(2000), 여인천하(2001), 흥국영(2001), 상도(2001), 명성황후(2001), 장희빈(2002), 여사 박문수(2002), 태양인 이제마(2002), 대장금(2003), 왕의 여자(2003), 불멸의 이순신(2004), 황진이(2006), 왕과 나(2007), 이산(2007), 한성별곡-정(2007), 정조암살 미스터리(2007), 대왕 세종(2008), 동이(2010), 거상 김만덕(2010), 뿌리 깊은 나무(2011), 공주의 남자(2011), 인수대비(2011), 천명(2013), 구암 허준(2013),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2013),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



MBC에서 방영중인 역사드라마 <기황후> 포스터
(출처 : MBC 기황후 공식홈페이지[www.imbc.com/broad/tv/drama/empress/])

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논란은 우리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기록된 인물이 드라마에서는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그려진다는 데에서 촉발되고 있다. 주인공인 기황후는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갔다 황제의 총애를 받아 황후의 자리에까지 오른 고려시대의 인물이다. 역사에서는 기황후가 원나라 혜종의 황비가 된 이후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고 공민왕 폐위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려정벌을 명하게 하는 등 고려에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함께 등장하는 충혜왕도 사치와 향락을 일삼은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는 제작진이 기황후를 “낯선 이국의 황실에서 고려의 자긍심을 지키며 운명적인 사랑과 정치적 이상을 실현한 여인”으로, 충혜왕을 “원나라에 맞서는 기개 넘치고 영민한 고려

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학계, 언론, 네티즌의 역사 왜곡 문제 제기가 크게 확산되었다. 제작진은 충혜왕을 가공의 인물인 왕유로 바꿨다. 또 실제 방송이 시작될 때 “이 드라마가 고려말, 공녀로 끌려가 원나라 황후가 된 기황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으며, 일부 가상의 인물과 허구의 사건을 다루어서 실제 역사와는 다르다”

는 것을 자막으로 밝혀 소재만 역사적 사실에서 따왔을 뿐 허구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임을 강조하였다. 드라마를 집필하고 있는 작가들도 “기황후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70%가 허구의 인물이다. 그리고 기황후라는 역사적 인물의 성공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인물의 흑역사도 후반부에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기황후> 이전에도 역사드라마의 역사 왜곡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선덕여왕>, <공주의 남자>, <근초고왕>, <광개토태왕>, <무사 백동수>, <계백> 등도 역사 왜곡의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러나 대부분 역사드라마는 역사를 그대로 재연하거나 재조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처음부터 허구를 표방하고 있고, 극의 구성과 흥미를 위해 허구적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또 이런 창작은 표



타이페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기황후의 초상 (출처: 경향신문, 「MBC 새월화극 '기황후' 왜곡 논란, 역사학자들도 "잘못"」, 2013년 8월 29일자)

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역사적 왜곡 시비를 크게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창작예술이 지닌 표현의 자유를 만족시킬 수 있는 허구의 경계선은 어떻게 그어져야 하는가?

역사드라마와 허구적 표현의 자유

역사드라마는 서술방식에 따라 정사(正史)를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부터 야사(野史)나 민중사를 토대로 한 상상이나 허구적 서술로 나누기도 하고, 또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데에 충실한 정통 드라마와 허구와 상상력이 극대화된 이른바 퓨전사극, 팩션사극, 판타지 사극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것이 정통사극이든 팩션사극이

든, 실존인물이 등장한다면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주인공의 행적을 사실과 비교하고 평가하게 된다. 보통 그 역사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공공담론의 영역 속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때로는 법적 규범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다. 공공담론의 영역에서는 드라마 내용이 역사적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든가, 또는 기존의 역사적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온다고든가 하는 점들을 주로 다룬다. 법적 영역에서는 주로 실존인물과 연관된 사람들의 명예에 손상이 가해져 해당 인물에 대해 시청자의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나타난다.

드라마의 내용이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시청자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킨다면 논란의 여지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여길 만큼 혼동을 준다면 논란이 확산되고 때로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논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인도 TV 시리즈로 방영되고 있는 <조다-악바르>는 무굴제국 왕가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 인도 북부의 라자스탄 지역 라지푸트인들의 이미지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민족이 크게 항의하고 있다. 2013년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은 영화 <아르고>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미국대사관에 잡혀있던 인질을 구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란 정부는 이 영화가 이란 문화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검토하기도 했다. 멜 깁슨이 제작한 <아포칼립토>는 한때 중앙아메리카에서 흥성했던 마야제국이 배경인데 실제 역사를 다

론 영화가 아니었음에도 마야인들을 흉악한 민족으로 묘사했다고 해서 미국 내 아메리카 원주민, 멕시코, 과테말라, 고대 마야문명 연구가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역사드라마가 소송에 이르는 경우는 대체로 역사적 인물 당사자 또는 후손들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여길 때 일어난다.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 의한 표현과 예술의 자유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개인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인격권과 충돌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할 때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衡量하여 인격권 구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게 된다.



마야제국 배경의 영화 아포칼립토(APOCALYPTO) 포스터
(출처 :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

역사드라마는 보통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가 진행된 시기를 다루게 되므로 그 주인공이 사망한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특별한 사안이 아닌 한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소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여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된 소송은 대부분 드라마의 실존인물이 생존해있거나 사망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근현대 역사드라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현대 역사드라마나 영화와 관련된 명예훼손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역사드라마의 허구가 실존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언론보도에 적용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모든 역사드라마나 영화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제작, 방영에는 기본적으로 허구를 전제로 한 일반 드라마에 대하여 가능한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언론기관의 보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드라마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위법성 조각사유에 정한 기준이 일용 적용된다.”(서울중앙지방

법원 2007. 9. 19. 선고 2007노1981)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 적용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역사드라마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먼저, 공익성은 드라마가 국민의 관심사인 역사의 인물을 다루고 새로운 역사적 해석이나 관점을 담아내고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사회적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있느냐로 판단하게 된다. 진실성과 상당성은 제작 당사자가 진실확인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느냐와 확보가능성으로 판단된다. 관련 당사자를 만나거나 당시 존재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조사하여 기록되지 않은 역사 부분을 개연성 있게 구축했느냐가 고려되어야 한다. 합리적 수준의 근거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한다면 다소 과장되고 추측적인 표현은 왜곡이나 억측 또는 중대한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해된다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약간의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불명확하고 모호한 묘사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그 진위 조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이 참작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미 사망한 역사의 인물에 관한 사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역사적 사실로 이행하여 간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인물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호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에서 백범의 암살 배후로 묘사된 김창룡의 유족이 청구한 소송과 <서울 1945>에서 이승만과 장택상의 유족이 드라마가 이승만, 장택상을 여운형의 암살 배후인 것처럼 묘사하였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존인물이 생존해 있거나 논픽션 성격을 지닌 드라마는 이보다 엄격한 진실성과 상당성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즉 드라마는 신속성이 일반보도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사실에 대한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 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원고와 박정희, 김형욱 등의 정치적 관계를 비하하여 묘사했다고 주장한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생존하고 있고 사실 확인이 용이함에도 이들을 다룬 허구적 드라마가 큰 논란 없이 방송된 경우도 있다. 영국의 전·현직 총리의 정치적 거래를 다룬 영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The Deal>은 전·현직 총리 양 당사자만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묘사했다. 여기에는 토니 블레어(Tony Blair)와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이 행한 것으로 알려진 당수직 거래내용뿐만 아니라 블레어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 등 명예훼손에 이를 수 있는 묘사가 담겨져 있었다. 정치인의 경우에는 역사적 개연성에 따른 허구적 묘사가 더 크게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시청자가 드라마의 내용을 실제 상황으로 인식할 가능성의 여부가 적용된다. 드라마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되어 이야기가 전개될 때 묘사된 사실이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일반시청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이를 말해준다. 근현대사를 다룬 드라마 소송의 판결에는 대부분이 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 <그때 그 사람> 소송에서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할 때 관객들이 영화 속의 인물과 실제 인물을 동일시하게 되고 허구라는 사실을 망각할 경우가 많으

로 영화가 실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다면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세부사항과 등장인물의 심리묘사는 모두 픽션입니다”는 자막을 삽입했음에도 실제 사건과 픽션이라는 두 명제에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실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다큐멘터리 삽입 부분을 삭제하라고 판시하였다. <실미도> 소송에서는 영화에 부가하여 상영되는 자막에 각색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일반 관객이 영화와 실제 상황을 혼동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았다.

셋째, 드라마의 특성이 적용된다. 즉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드라마 자체의 내적 규칙과 패턴에 따라 일관성 있게 표현될 경우 실존인물의 허구적 표현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드라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드라마의 전개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거나 창작물인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면 허구적 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드라마는 다큐멘터리와 달리 대본과 연출에 의한 창작물이므로 논픽션 드라마일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인물의 재창조나 줄거리의 구성에 있어 작가나 연출자의 상상에 의한 각색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드라마의 현실감이나 시청자들에 대한 흥미와 감동을 위하여 작가나 연출자에 의해 어느 정도 실제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면이 부가되는 것은 부득이 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드라마는 그 전개상 갈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 갈등은



영국 드라마 <The Deal> 포스터(출처 : Illiotgould, 「The deal with The Deal」, 2008년 7월 28일자)

주로 등장인물과 그 대립적인 인물 간의 성격과 대사를 통해 묘사된다. 따라서 허구적인 묘사는 등장인물들의 의사나 행동과 심히 대립되는 대사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허구적인 대사나 행동이 드라마에서 인물의 성격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고 전체 플롯을 전개해나가는 데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드라마의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야인시대>에서 임회수가 폭력조직을 결성, 정치권과 결탁하고, 배우를 폭행하는 등 인격을 심하게 비하하는 묘사를 했다고 주장한 소송에서도 이런 점이 인정되어 원고패소 결정이 난 바 있다.

외적 개연성과 내적 개연성 - 상상의 역사도 신뢰와 윤리가 고려되어야

근현대사를 다룬 역사드라마의 역사 왜곡 문제와 표현의 자유 문제는 인격권 침해 소송과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그 경계선을 짐작할 수 있다. 허구적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따른 개연성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며 드라마적 특성상 필요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은 비교적 역사적 사실에 대해 그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언이나 자료의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에 설정된 것이다. 물론 역사적 사실의 여부나 역사적 해석에 대한 문제는 사회공동체의 영역에 맡겨져 있다. 그렇다면 <기황후>처럼, 근현대사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대를 다룬 드라마의 역사 왜곡 문제에

서 표현의 자유가 인격권 침해와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의 평가영역으로 넘어간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드라마에서의 인격권 침해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는 유족의 인격권 보다는 역사의 평가가 더 중요하며, 특히 남아 있는 기록이 많지 않고 그 기록도 정확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 창작 표현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여럿 있다. 우암 송시열 후손들이 <TV 조선왕조실록>에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신숙주의 후손들은 <공주의 남자>에서 신숙주의 모습이 부정적



KBS 2TV에서 방영된 <공주의 남자> 포스터(출처: KBS 공주의 남자 공식홈페이지[<http://www.kbs.co.kr/drama/princess/>])

으로 나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김수로왕이 시조인 김해 김씨와 허 왕후의 후손 등의 모임인 가락중앙총친회는 <김수로>가 김수로왕의 출생과 성장 과정, 허 왕후의 출현 배경 등을 왜곡했다며 방영금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드라마 방영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드라마에서 갈등구조 구현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일부 가감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의 표현과 예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활동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드라마에 등장하는 조상의 언행을 통해 후손 개개인이 직접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없다. 사실 이런 소송은 전략적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법적 분쟁보다는 시청자 불만처리나 여론형성에 의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순천 김씨 총친회는 그동안 드라마에서 김종서 장군이 권력욕이 강한 인물로 묘사됐다고 주장하면서 <왕과 비>에서는 충신으로 그려달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반영되었다.

오래된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역사적 평가와 다른 허구의 역사가 시청자들에게 사실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고 등장인물과 관련된 인격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왜곡하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으며 다수 시청자의 정서에 상처를 주거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의 조화를 위해 비교적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

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좀 더 고려되어야겠다.

첫째, 느슨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방송은 교육적 기능, 여론 형성의 기능 등 공익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상상하는 역사라 하더라도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드라마는 공익성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역사드라마가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를 보는 외국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역사인식은 필요한 것이다. 진실성, 상당성은 적어도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지켜질 수 있다. 만약 드라마가 진실성, 상당성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도 좋을 만큼 허구적 내용이 압도적이라면 시청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등장인물이나 여타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역사드라마의 허구는 외적 개연성과 내적 개연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드라마 작가는 역사적 사실이 남아있지 않은 부분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채우게 되는데 이 허구 부분이 역사적 사실과 함께 전체적인 플롯에 맞아야 외적 개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상상은 자유이나 거기에는 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내적 개연성은 드라마가 지니는 표현양식을 충실히 지키면서 인물이나 사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드라마에서는 역사적 개연성의 외적 개연성과 내적 개연성 모두 등장인물의 성격 형성이나 갈등의 전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외적 개연성은 등장인물의 성격이 형성되는 배경과 등장인물의 행동을

유발하는 필연적 상황을 제공하게 된다. 내적 개연성은 등장인물들이 플롯을 이끌어나가는 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외적 개연성이 잘 갖춰져 있어야 내적 개연성이 살아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드라마의 허구는 역사적 맥락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짜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황후>는 외적 개연성에 충실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허구성이 높은 역사드라마의 장르를 표방하고 등장인물을 바꾸었다면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표현양식에서 자유로운 요즘의 역사드라마에 이 두 가지 점을 적용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역사인식이나 역사교육 문제의 탓을 역사드라마에 떠넘기고 있다는 억울함도 있다. 역사드라마라는 이름으로 드라마를 제작할 때마다 왜곡 시비가 일어나고 소송이 제기된다면 사실상의 검열 역할을 하여 상상력 풍부한 역사드라마가 나오기 힘들 수도 있다. 근현대사 드라마가 계속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다 보니 <서울 1945> 이후에는 실명인물이 등장하는 현대 역사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럼에도 역사드라마는 시청

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역사의 한 부분을 상상으로 재구성해주는 것이고 시청자들은 그 상상하는 역사에서도 신뢰를 형성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상상력도 기본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범위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8·15 광복 전후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서울 1945> 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 홈페이지[movie.naver.com])

2013년 독일 언론보도 관련 불만 현황과 주요 내용



글. 김세환
독일 만하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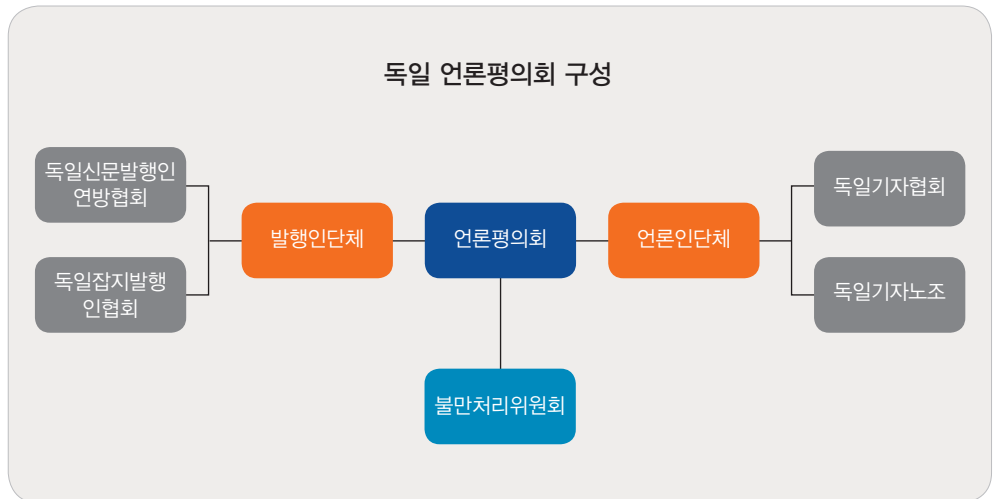


독일의 언론평의회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기본적으로 독일 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의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법정기구도 아니지만, 독일 언론평의회 업무 중 하나인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률 「독일 언론평의회에 의해 설치된 불만처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법률」¹⁾로서 그 권한과 기능을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언론보도 관련 불만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론평의회를 살펴봐야 한다.

1) 독일 언론평의회에 의해 설치된 불만처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법률 (Gesetz zur Gewährleistung der Unabhängigkeit des vom Deutschen Presserat eingesetzten Beschwerdeausschusses)

독일 언론평의회의 구성과 업무

언론평의회는 각각 2개의 발행인단체와 언론인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행인단체는 독일신문발행인연방협회(Bundesverband Deutscher Zeitungsverleger/BDZV)와 독일잡지발행인협회(Verband Deutscher Zeitschriftenverleger/VDZ)이며, 언론인단체는 독일기자협회(Deutscher Journalisten-Verband/DJV)와 독일기자노조(Deutscher Journalistinnen- und Journalisten-Union/DJU)이다. 4개 단체는 각각 2인의 대의원을 언론평의회에 파견하며, 이들 대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언론평의회의 재정, 인사, 조직 업무를 수행한다. 대의원을 구성하는 4개 단체는 28인으로 구성된 언론평의회 총회를 위한 대표자도 파견한다. 매년 2회에 걸쳐 개최되는 언론평의회 총회는 언론규약(Pressekodex)과 관련된 보도윤리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인쇄매체와 온라인매체를 포함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불만은 언론평의회 산하 불만처리위원회(Beschwerdeausschuss)에서 담당한다. 불만처리위원회는 매년 4회 개최되며, 보도내용에 대한 불만을 언론규약에 따라 평가한다. 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발행인 대표자와 기자들이 각각 동수로 구성된다. 이외에 언론평의회와 산하 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언론평의회는 두 개의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대의원을 파견하는 4개 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불만처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연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참고로 2010년 이후, 독일연방정부의 보조금은 223,000유로이다.

2013년 불만접수 및 처리 현황

2013년도 언론평의회에 접수된 불만건수는 총 1,347건이었다. 2012년의 1,500건에 비해 약 10%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2013년에 접수된 ‘집단불만(Sammelbeschwerden)²⁾’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129건).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단일 보도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대형 이슈에 대한 집단 불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난 7년간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2010년(1,661건)에는 ‘러브퍼레이드(Loveparade)’참사³⁾에 대한 불만이 245건, 잡지 티타닉(Titanic)의



테크노음악축제에서 발생한 군중압사 사건인 러브퍼레이드 사고 당시 모습(출처 : 프라이에프레쎬(Freie Presse), 「Staatsanwaltschaft will strafprozess nach Loveparade-Katastrophe,」, 2014년 2월 11일자)

테크노음악축제에서 발생한 군중압사 사건인 러브퍼레이드 사고 당시 모습(출처 : 슈바이쉴짜이퉁(Schwäbisch Zeitung), 「Schwere Polizeifehler bei Loveparade,」, 2011년 5월 1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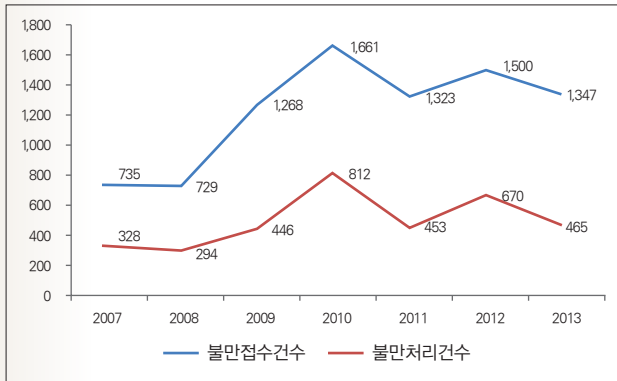
문제가 된 TITANIC의 가톨릭교 비하 사진(출처 : <좌>티타닉(TITANIC), 「Kirche heute,」, 2010년 4월호, <우>티타닉(TITANIC), 「Die undichte Stelle ist gefunden,」, 2012년 6월호)

2) 언론평의회는 최소 5인 이상의 독자가 출판물의 동일 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때 이것을 집단불만으로 일컫는다.
3) 뒤스부르크(Duisburg)에서 개최된 테크노음악축제에서 발생한 군중압사 사건

‘지금의 교회(Kirche Heute)⁴⁾’에 대한 불만이 200건 제기되면서 급증하였다. 또한 2012년(1,500건)에도 티타닉의 교황 표지사진에 대한 불만이 180건, 일간지 빌트(Bild)의 ‘포스트폰바그너(Post Von Wagner)’ 칼럼에 70건⁵⁾의 불만이 제기되어 전체 불만건수의 증가를 이끌었다.

2013년 언론평의회에 접수된 1,347건의 불만 중 318건은 단순처리(Vereinfachtes Verfahren)로

2013년 언론평의회에 접수된 불만접수 및 처리 현황⁶⁾



결정되었다. 단순처리는 불만접수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방송프로그램 혹은 광고내용에 대한 불만들로서 이것들은 언론평의회 소관이 아니다. 나머지 1,029건의 불만은 정식절차로 처리되었으며, 언론규약과 관련된 심사에서 집단불만을 1회로 처리할 경우 910건이 해당한다. 그리고 정식절차에 의해 처리된 910건의 불만 중 465건이 불만처리위원회로 이첩되었으며, 나머지 445건은 사전심사(Vorfahren)에서 ‘이유없음(unbegründet)’으로 판단되었다. ‘이유없음’ 판단은 보도내용

과 편집이 불공정했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의미로서, 언론평의회는 이러한 평가에 불만을 제기한 독자와 불만의 대상이 된 매체에 서면으로 공지하였다.

2013년도 불만처리건수는 불만접수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집단불만 제기가 많았던 2010년(812건)과 2012년(670건)에 불만 처리 건수도 증가하였으며, 지난 7년간 추이를 살펴볼 때,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불만접수와 이에 따른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제재 현황

2013년 언론평의회 산하 불만처리위원회로 이첩된 465건 가운데 239건이 접수된 불만에 대해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고, 226건에 대해서는 ‘이유있음(begründet)’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불만처리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이 가운데 총 191건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다. 참고로 제재 순위는 일반적으로 언론규약 침해의 심각성, 관련자의 중요도, 그리고 편집을 통해 가능한 보상수

4) 당시 가톨릭 교회의 성추문을 조롱하고자 잡지 표지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성직자의 구강성교를 느끼는 것으로 묘사한 그림을 게재하여 파문이 발생함.

5) 동성부부에 대한 비판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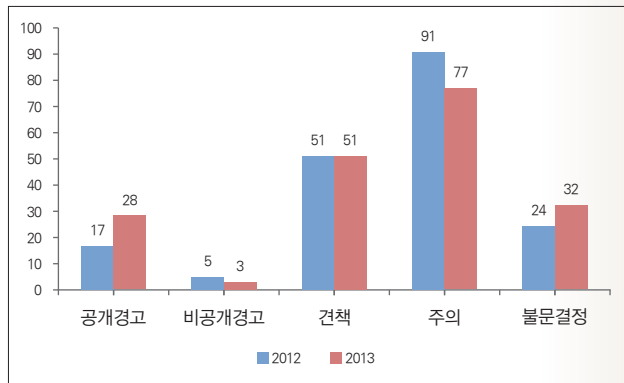
6) Deutscher Presserrat (2014), Jahresbericht 2012/2013, P.6

준(수정, 사과 등) 등에 따라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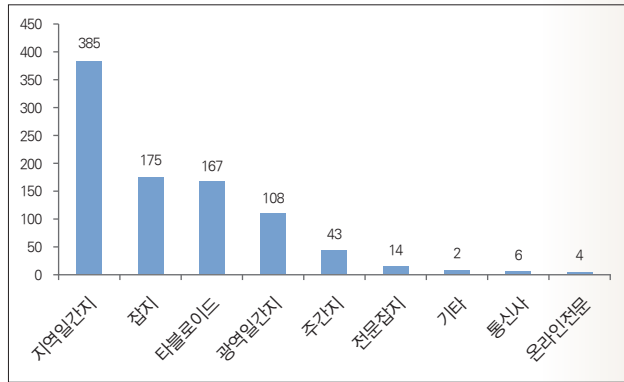
2013년도 제재 결정을 살펴보면, 가장 강력한 제재인 ‘경고(Rüge)⁷⁾가 총 31건이었다. 경고는 다시 ‘공개경고(öffentliche Rüge)’와 ‘비공개경고(nicht-öffentliche Rüge)’로 나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3년에는 28건의 공개경고와 3건의 비공개경고가 결정되었다. 2013년의 경고 수치는 2012년의 22건, 2011년의 20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고,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0년의 40건에 비해서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외에 불만처리위원회는 51건에 대해 ‘견책(Missbilligung)⁸⁾, 77건에 대해 ‘주의(Hinweis)⁹⁾, 32건에 대해서는 접수된 불만에 대해 이유는 존재하나 제재는 면제하는 ‘불문결정¹⁰⁾을 내렸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경미한 제재인 ‘주의’는 줄어든 반면, 강력한 제재인 ‘공개경고’는 대폭 증가하였다. 이것은 언론평의회가 언론규약 침해 여부를 위중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에 가장 많은 불만이 제기된 매체는 지역일간지로서, 총 910건 중 42%에 해당하는 385건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뒤이어 인쇄 잡지가 175건, 타블로이드신문이 167건, 광역일간지가 108건, 주간지가 43건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반면 불만을 제기한 쪽을 살펴보면, 735명의 개인이 언론보도에 불만을 제기하며 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정당, 협회, 기구와 같은 이익집단에서 총 175건(19%)의 불만을 제기하였다. 2013년 이익집단의 불만제기는 8%에 머물렀던 전년

언론보도 불만 관련 제재 현황 ¹¹⁾



매체별 불만제기건수 ¹²⁾



7) 언론평의회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인쇄매체는 언론평의회 결정을 반드시 지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공개경고와 달리 비공개경고는 접수된 불만이 언론규약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경고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8) 언론규약의 심각한 위반이 지적되지만, 불만처리위원회 규칙 15항에 의거하여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15항(경고공개 의무).

Verpflichtung zur Rügenveröffentlichung)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언론기관은 언론규약 16항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위원회의 경고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련자 보호가 요구될 때에는 불만처리위원회가 공개의무를 면해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9) 언론규약의 미약한 위반이 지적되며, 제재 결정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10) 불문결정은 보도편집이 언론규약 침해사항에 대해 공정하게 대응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Deutscher Presserat (2014), Jahresbericht 2012/2013, P.9; P.24.

12) Deutscher Presserat (2014), Jahresbericht 2012/2013, P.9

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9명의 독자가 교황 선출에 대한 일간지 타게스짜이퉁(Tageszeitung)의 기사를 비판하였다. 해당 기사는 기사 헤드라인¹³⁾ 관련 신중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상이한 헤드라인으로 편집된 동일 기사의 온라인 칼럼에 대해서는 불만이 제기되지 않았다. 또한, 유명인에 대한 풍자와 조롱으로 유명한 잡지 티타닉의 우편엽서에 대해서 17편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사후 피임약을 둘러싼 가톨릭교회 내 논쟁에 대한 것이다. 주간지 스텐(Stern)의 안경업자 관련 기사에도 23건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높은 가격과 불충분한 구매 상담을 비판한 것으로, 언론평의회는 사전 심사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다. 언론평의회는 해당 잡지가 심층취재 결과(높은 가격, 불투명성, 부족한 고객 응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전자담배에 대한 빌트(Bild) 보도에 대해서도 9건의 불만이 제기되었는데, 해당기사는 저널리즘의 신중의무 측면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다.

이른바 ‘황색저널리즘’으로 지칭되는 타블로이드 신문과 잡지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언론평의회는 2013년에 결정한 31건의 경고 중 5건을 타블로이드 언

론에 부과하였다. 해당 매체들은 유명인의 사생활을 주로 보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실보도 명령(언론규약 1항)¹⁴⁾과 신중보도 의무(언론규약 2항)¹⁵⁾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테니스 스타 ‘스테피 그라프(Steffi Graf)’의 정신상태 관련 보도,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비밀이혼 보도, 독일 전통음악가 ‘스테판 므로스



타게스짜이퉁의 교황 비판 헤드라인(출처 : Tageszeitung, 「Junta-Kumpel löst Hitlerjunge ab」, 2013년 3월 15일자)

13) "Junta-Kumpel löst Hitlerjunge ab"

14) Pressekodex Ziffer 1(Wahrhaftigkeit und Actung der Menschenwürde): 'Die Achtung vor der Wahrheit, die Wahrung der Menschenwürde und die wahrhaftige Unterrichtung der Öffentlichkeit sind oberste Gebote der Presse. Jede in der Presse tätige Person wahr auf dieser Grundlage das Ansehen und die Glaubwürdigkeit der Medien.'

15) Pressekodex Ziffer 2(Sorgfalt): Recherche ist unverzichtbares Instrument journalistischer Sorgfalt. Zur Veröffentlichung bestimmte Informationen in Wort, Bild und Grafik sind mit der nach den Umständen gebotenen Sorgfalt auf ihren Wahrheitsgehalt zu prüfen und wahrheitsgetreu wiederzugeben. Ihr Sinn darf durch Bearbeitung, Überschrift oder Bildbeschriftung weder entstellt noch verfälscht werden. Unbestätigte Meldungen, Gerüchte und Vermutungen sind als solche erkennbar zu machen. Symbolfotos müssen als solche kenntlich sein oder erkennbar gemacht we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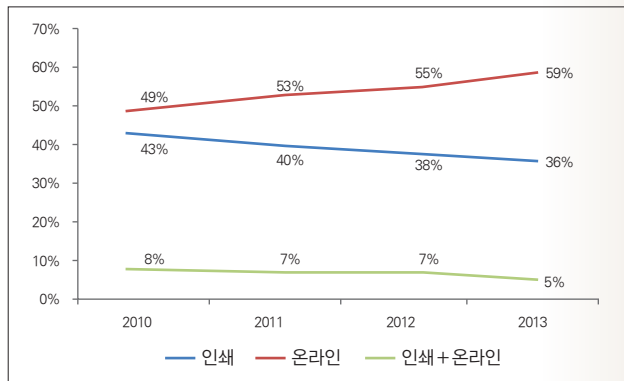
(Stefan Mross)’의 음주 문제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태의 유명한 기사는 공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일정부분 용인되었지만, 2013년 언론평의회는 신중보도의무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참고로 타블로이드 매체에 대한 제재는 5건의 ‘경고’ 이외에 5건의 ‘견책’도 결정되었다.



타블로이드 매체 문제 기사들(좌: 스테피 그라프(Steffi Graf),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우: 스테판 므로스(Stefan Mross)) (출처 : <좌> 프로미벨트(Promiwelt), 「Ihr Absturz in die Lebenskrise」, 2013년 4/5월호, <가운데> 마이네프라이짜이트(Meine Freizeit), 「Verheimlichte Scheidungstragödie」, 2013년 5월호, <우> 프라우악투엘레(Frau Aktuelle), 「Pikante Enthüllung」, 2013년 4월호)

인쇄기사와 온라인기사의 불만을 비교해보면, 온라인기사에 대한 불만은 총 534건이 제기되어, 정식절차에 의해 처리된 910건의 불만 중 59%를 차지하였다. 반면 인쇄기사에 대한 불만은 총 331건이 제기되었고, 온라인기사와 인쇄기사의 동일 보도에 대해서는 총 45건이 제기되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인쇄기사에 대한 불만은 2010년 43%에서 2013년 36%로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지만, 온라인기사에 대한 불만은 2010년 49%에서 2013년 59%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지면을 발행하는 매체보다 인터넷 기반의 보도가 더 적극적이고 선동적이다. 또한, 동일 언론사일지라도 인쇄기사의 경우 지면의 한계로 편집의 ‘필터링’ 기능이 중요하게 작동하지만,

인쇄기사와 온라인기사에 제기된 불만 현황 16)



16) Deutscher Presserat (2014), Jahresbericht 2012/2013, P.10

온라인에서는 지면에 실리지 못한 자사 취재기사, 온라인취재팀의 수집기사, 다양한 이해집단의 보도자료 등이 여과 없이 자사 사이트에 게재된다.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보도가 언론규약을 침해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온라인에 게재되었어도, 지면에 동시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불만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큰 변화 없이 소폭 하락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독일의 보도 불만 이슈 및 정책 동향

2013년에 발생한 언론보도의 불만처리 관련 핵심 이슈와 정책을 소개하면 첫째, 위에서 언급한 교회/종교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극우주의 테러집단을 둘러싼 이슈에서도 여러 시사점이 나타났다. 2011년 독일 소도시 ‘쯔빅카우(Zwickau)’에서 극우조직 NSU¹⁷⁾의 주택가 폭발테러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3년 5월에는 해당 테러의 핵심용의자로 조직원 ‘베아테 체페(Beate Zschäpe)’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시작 후 극우주의와 테러리즘과 관련된 보도·분석·논평이 증가하였고, 이에 발맞춰 언론평의회에 ‘NSA’, ‘Zwickauer Zelle(쯔빅카우 지역 세포조직)’, ‘Beate Zschäpe’, ‘극우테러(Rechtterrorismus)’ 등의 어휘가 포함된 기사에 대한 불만이 빈번하게 접수되

었다. 재판 시작 전 언론평의회에 극우주의자들의 연쇄 살인 보도에 대한 17건의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재판이 진행되자 10건의 불만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NSU 재판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평의회는 유의미한 두 가지 판단을 내렸다. 보도내용 측면에서, 재판 중인 용의자와 관련하여 언론에 허용된 표현 수위에 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용의자 ‘베아테 체페’에 대한 일간지 빌트의 기사 헤드라인 “악마가 아름다워졌다(Der Teufel hat sich schick gemacht)”에 대해 일부 불만처리위원회 위원들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해당 기사에서 그녀는 ‘나치테러리스트(Nazi-Terroristin)’로 표현되었는데, 언론규약 13항¹⁸⁾에 의거하여 언론평의회는 ‘나치테러리스트’라는 어휘가 선입견에 입각한 표현인지에 대해 판단해야만 했다. 결론적으로 불



재판중인 용의자 ‘베아트 체페’의 사진을 공개한 일간지 빌트의 기사 헤드라인 (출처 : 빌트(Bild), 「Der Teufel hat sich schick gemacht」, 2013년 5월 7일자)

17) 국가사회주의지하조직(Nationalsozialistischer Untergrund)의 약칭으로, 나치즘을 신봉하는 인종주의적 극우 세력.

18) Pressekodex Ziffer 13(Unschuldvermutung): Die Berichterstattung über Ermittlungsverfahren, Strafverfahren und sonstige förmliche Verfahren muss frei von Vorurteilen erfolgen. Der Grundsatz der Unschuldvermutung gilt auch für die Presse.

만처리위원회는 ‘이유없음’으로 기각하였는데, 당시까지 조사에 따르면 테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은 언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악마(Teufel)’라는 어휘도 원고 측 입장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 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부분도 있다. 지역일간지 <함부르거아벤트블라트(Hamburger Abendblatt)>는 NSU 재판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경찰의 직책과 이름이 공개되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언론규약 8항¹⁹⁾에 의거하여, 재판 중인 증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견책’ 제재를 결정하였다. 언론평의회는 신분이 공개된 증인은 실질적 위험에 종종 빠지게 되고, 이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분명히 하였다. 또한, 증인이 경찰이라고 해서, 언론규약 상 증인비공개 규정이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NSU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언론사 자리 배정 논란은 독일 사법기구와 관련된 언론활동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었다. 해당 재판의 취재를 위해 테러희생자 출신국민인 터키 언론들이 대규모로 방청을 신청하였고, 이에 한정된 방청석을 고려하여 언론사별 추첨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 독일 주요 언론사들의 방청이 제한되면서, 법정 내 취재와 중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현재 독일법원은 법원조직법(GVG) 제169항에 따라, 재판 내용의 공적 공개 및 상영을 목적으로 한 시청각적 녹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평의회는 인터넷 시대에 구시대적 금지규정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언론평의회는 범죄자에 대한 성급한 보도로 이른바 ‘낙인효과’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시대적 흐름과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에 대해 시청각 녹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이 제한된 방청석 배정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재판을 동영상 중계하거나, 법정 내 노트북을 이용한 취재 허용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둘째, 언론평의회는 인권보호를 위해 언론규약을 개정하였다. 특히 범죄자와 피해 보도에 대한 윤리 규칙이 개정되었다. 2013년 5월 13일 총회에서 보도의 신중한 접근을 위해 언론규약 8항²⁰⁾(인격 보호)이 새롭게 의결되었다. 8항의 개정 목적은 인권 보호를 위해 언론인들이 쉽게 활

19) 재판 증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다.

20) Pressekodex Ziffer 8(Schutz der Persönlichkeit): Die Presse achtet das Privatleben des Menschen und sein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st aber sein Verhalten von öffentlichem Interesse, so kann es in der Press erörtert werden. Bei einer identifizierenden Berichterstattung muss das Informationsinteresse der Öffentlichkeit die schutzwürdigen Interessen von Betroffenen überwiegen; bloß Sensationsinteressen rechtfertigen keine identifizierende Berichterstattung. Soweit eine Anonymisierung geboten ist, muss sie wirksam sein. Die Presse gewährleistet den redaktionellen Datenschutz.

용할 수 있는 취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편집진과 발행인들은 범죄보도에서 구체적 기준이 확립되기를 희망하였다. 즉, '언제 범죄자를 공개할 것인가?', '범행 수법과 재판 과정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유명인에 대한 보도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론규약을 바라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언론규약 8항은 피해와 범죄자에 대한 보도윤리를 분리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범죄보도에서 향후 공공의 알 권리와 범죄자의 인격권을 동등하게 둔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특정 사건의 용의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범죄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언론평의회는 개정된 언론규약 8항이 본래의 의도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입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언론은 범죄 관련 당사자를 언제 보도해야 하는지 구체적 사례로 확인해야 하는데 가령, 범죄수법이 특별 혹은 심각하거나, 이미 대다수 대중이 해당 범죄를 인지하고 있을 때이다. 이에 덧붙여 언론규약은 범죄보도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도 담고 있는데 범행고의성의 정도, 범죄에 대한 비난과 심각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언론평의회는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도가 언론 윤리 차원에서 확인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번 언론규약 8항의 개정은 독일 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 보호와 같은 가치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취재 및 편집 과정에 대한 유용하고 분명한 윤리기준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사고 사진과 광고를 연계한 편집과 관련된 부분이다. 두 명의 여성이 사망한 심각한 교통사고 사진이 온라인매체에 노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사진은 생명보험 광고와 같이 게재되었다. 이에 대해 한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기 힘들고, 편집이 매우 악의적이라 비판하며 불만을 제기하였다. 해당 매체는 광고가 편집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광고 관련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실제로 광고를 게재한 보험과 해당 사고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편집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매체는 독자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이해를 구했으며, 향후 이러한 형태의 연계를 피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언론평의회도 이번 사안이 언론규약 1항, 특히 사고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존엄성을 훼손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행태를 피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넷째, 언론평의회는 EU위원회가 설치한 자문그룹 <미디어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고위급 그룹(High Level Group on Media Freedom and Pluralism)>의 권고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해당 권고는 2012년 말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EU차원에서 제안되었으며, 자문그룹은 역내 회원국들에게 독립적 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미디어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반박 기사를 게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자문그룹은 보도 분야에서 예상되는 점진적 질적 하락을 피하기 위해 역내 회원국의 모든 언론이 행동지침과 편집가이드라인을 공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평의회는 자문그룹이 제기한 이른바 ‘공동규제(Co-Regulierung)’보다 독일에서 수십 년 동안 작동해온 자율통제기구가 기능적으로 더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반박하였다. 현재 독일에서 작동하고 있는 언론규약 상의 근거들, 즉 저널리즘에 업무윤리 규정을 부과하고, 보도 관련 불만을 심사하며, 언론인의 자율의무에 근거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자유의 확대와 언론의 질적 향상을 보장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EU차원에서 국가별 현황을 감시하는 것은 미디어 자유를 감소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언론평의회는 EU 역내 일부 회원국의 언론 현황을 외면한 것으로, EU에서 가장 큰 언론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독일이 언론자유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권고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언론평의회는 ‘성전환자 관련 보도’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2013년 여러 성전환자 관련 단체들과 개인들이 약 70건의 불만을 언론평의회에 제기하였다. 제기된 불만의 핵심적 내용은 언론보도의 성전환자 관련 표현에 있는데, 예를 들어 ‘남성에서 여성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원래 남성/여성인’, ‘남자로 태어났지만’, ‘생물학적 성변화’ 등이다. 불만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감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성전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오직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였다.

언론평의회는 해당 불만을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였으며, 모든 사안을 개별적이면서 신중하게 처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불만이 사전심사에서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고, 단지 3건이 불만처리위원회로 이첩되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2건은 ‘이유있음’으로 결정되었고, ‘이유있음’으로 판결된 사례 역시 제재는 면제되었다.²¹⁾ 참고로 2009년에는 약 50건, 2010년에는 15건의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자율규제로 해당 문제를 다루었다.

언론평의회는 언론이 ‘성전환’ 주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기를 주문하였다. 또한, 언론이 특정 개인을 묘사하거나, 특정 어휘를 이용할 때 신중해야 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피하고자 성전환자들이 스스로를 묘사하거나, 지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조언하였다. 나아가 인간적으로 힘겨운 상황에 놓여있는 성전환자들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며, 잘못된 어휘나 개념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주문하였다.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기자들에게 성전환 관련 단체와 상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성전환 관련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거나, 보도 관련 어휘를 인정하는 것이 언론평의회는 임무는 아니지만, 성전환 주제에 대한 불만제기

21) 성전환 여성에 대한 범죄보도에서 피해자를 여성 옷을 입은 남성으로 표현함.

는 언론 윤리적 측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언론평의회는 옴부즈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옴부즈맨 제도는 영미권과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들에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독일에서는 그 역할과 기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2년 옴부즈맨을 운영하는 언론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이들은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언론규약에 입각한 보도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언론평의회는 옴부즈맨을 여론과 언론의 중요한 중재자로 간주하면서, 2013년 이들 단체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였다.

독일 언론계에서 옴부즈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족하다. 가령 어떤 옴부즈맨은 전문가이고, 다른 옴부즈맨은 외부인이지만, 또 다른 옴부즈맨은 매체의 편집진이기도 하다. 많은 옴부즈맨이 핵심 편집진과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옴부즈맨의 개입이 언론자유와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언론평의회와 공적 업무를 대신하지는 못하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언론평의회는 옴부즈맨이 저널리즘에 대한 일상적 감시를 구축함으로써 언론평의회와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2013년은 언론평의회와 이러한 시각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시기였다.

2013년 독일 언론평의회가 판단한 사안을 종합해보면 종교, 나치즘, 범죄, 섹스와 같은 사회적으로 휘발성이 강한 이슈들을 언론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언론자유와 의견표명의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지 고찰하고 있다. 2013년 독일 언론보도의 불만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합의가 우리의 언론중재 정책에 유의미하게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 흉악범 반론도 경청하며 피해 구제에 최선 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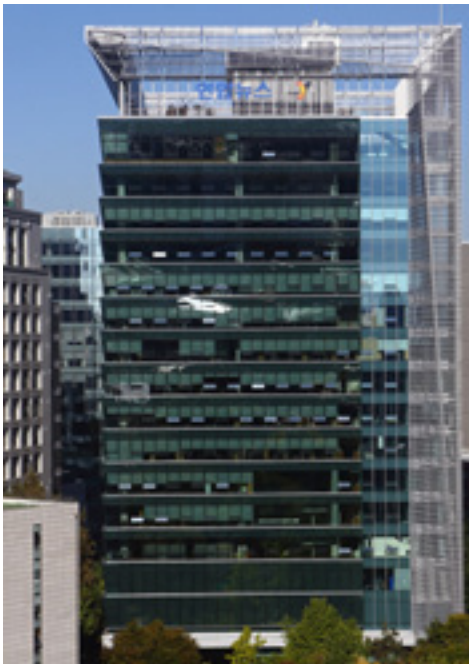
글. 최병국
연합뉴스 고충처리인



‘혜진·예슬 피살 사건’ 희생자 이혜진 양의 아버지 이○○ 씨가 지난 3일 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어린 딸을 살인마에게 잃은 아픔에 직장도 그만두고 6년여 동안 술에 의지해 고통을 버티던 그였다.

200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경기도 안양의 한 놀이터에서 이혜진(당시 10세)·우예슬(당시 8세) 양이

실종됐다. 84일 뒤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웃에 살던 38세의 남성 ○○○이 아이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야산 등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그가 2004년에 군포에서도 44세 여인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일이 추가로 밝혀졌다. 2009년 2월 26일 대법원은 ○○○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강제추행, 살해 등 혐의를 확정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현재 교도소에 있다.



혜진 양 아버지의 죽음이 지난 4일 연합뉴스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자 시민들은 끔찍한 사건을 다시 떠올리며 비극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에 소스라쳤다. 인터넷엔 이 씨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며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아울러 살인마 ○○○을 비난하고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었다.

그로부터 1주일여 지나 연합뉴스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다. 정정보도 청구서의 발신지는 '○○구치소'. 청구인은 '○○○' 바로 그였다. 혜진이와 예술이를 무참하게 살해한 범인.

○○○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지 4장 분량의 청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소심 재판 등을 다룬 과거 연합뉴스 기사에 '국과수 감정서에 성추행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대목과 '성폭행 하려다'라고 쓴 부분이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아 달라라는 내용이다. 비록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됐으나 '예술이 몸에 성추행 흔적이 있다고 국과수 감정서에 '기재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성추행은 있었으나 1심 때의 혐의인 미성년자 강간죄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니 '성폭행 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항변이다. 이 기사가 포털 등에 계속 남아 있으니 정정해달라는 것이 그의 요구다.

어처구니없었다. 예전 기사를 들춰보니 그는 기소되기 이전부터, 또 재판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형량을 줄이려 시도했다. 또 ○○구치소 교도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도 있다. 교도관 4명이 자신의 방을 검사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해 이를 따를 수 없다고 하자 금치 13일의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그의 특이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일이다. 청구서를 되풀이해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고 마음이 착잡했다.

그러나 천인공노할 범죄자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일. 법규에 근거해 신청한 그의 청구서 내용과 증거물이 진실인지, 주장이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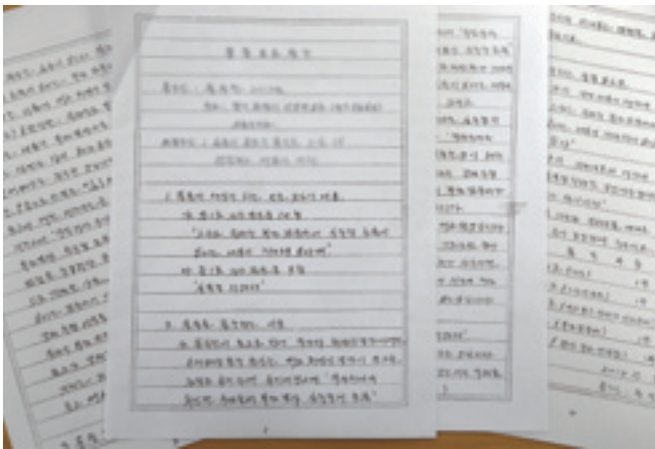


당한지 등을 성실하게 살펴보고 처리할 의무가 연합뉴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연합뉴스는 기사를 출고한 사회부를 중심으로 그의 청구서와 두툼한 판결기록 등 첨부문서에 대한 검증·검토에 들어갔다.

○○○ 건과 내용·성격은 다르지만, 고층처리인에게 접수되는 민원 중 상당수는 마음을 착잡하게 하는 것들이다. 거액의 뇌물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고위 공직자가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가혹한 징계를 받았으며 10년 전 기사를 삭제 또는 익명처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랫동안 실직상태에서 지병과 심적 고통에 시달리는 그의 처지에 인간적 연민도 들었으나 그의 말을 들어주는 어려웠다. 20년 전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폭력 등에 관한 혐의로 실형을 산 민원인은 "아직도 실명이 적시된 기사가 인터넷에 나돌아 자식들이 볼까 두렵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두목이나 살인범도 아니어서 포털 기사에선 이름을 익명 처리해주기로 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선 아직 조폭 조직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연합뉴스 데이터베이스(DB)엔 원문을 남기기로 했다. 젊었을 때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고위 성직자가 20여 년 전의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민원도 비슷하게

처리한 사례다.

기사의 오류나 상급심에서 뒤집힌 판결을 근거로 정정이나 최종 판결 추가 보도를 요구하는 일도 더러 있다. 지난 2012년 『대전경찰, ‘연구비 횡령 의혹’ 교수 6명 수사』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는 사건 경위와 함께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 해당 교수들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반론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추후 검찰은 피의자 모두



○○○이 연합뉴스로 보낸 정정보도청구서

에 대해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연합뉴스는 해당 교수들의 민원을 받고 사실을 확인해 처리했다.

과거엔 문제가 없었으나 요즘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기사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다. 예컨대 과거엔 범죄자 또는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주소, 성별 등을 기사에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필자의 기자생활 초기만 해도 1단짜리 사건 기사에도 이는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께부터 이런 관행이 바뀌어 왔다. 사회변화에 따라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판례와 인식이 변

화해서다. 지금은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고 공인 등 타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익명처리해야 한다. 이름을 적지 않아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특정해선 안 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포털 등에 과거 기사가 남아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 기사 삭제나 익명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기사 자체에 아무 문제도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아 기사 삭제나

익명처리 등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 여고 1학년 때 국제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연합뉴스 특파원과 자발적으로 인터뷰한 학생이 자신의 얼굴이 실린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해당 콘텐츠 전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미국대학에 유학 중인 이 학생은 치아교정을 받아 외모가 조금 달라졌는데 일부 누리꾼이 당시의 사진을 근거로 놀리고 해코지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20대 중반에 유명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도 인터뷰

기사가 나가고서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포털의 기사 삭제나 수정을 요구한 일도 있다.

이런 사례를 포함해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요청하는 일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인터넷의 발달로 포털 등 온라인에 기사가 반영구적으로 남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이런 사례들도 민원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 가급적 처리해주고 있다. 필자는 브뤼셀 특파원 시절인 2012년 유럽연합(EU)이 데이터보호법을 16년 만에 개정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법

규로 보장한 것을 여러 차례 기사로 다뤘다. EU의 '잊혀질 권리'는 이용자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합법적 근거 없이 획득된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서비스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되는 잊혀질 권리 민원엔 사실 합법적 근거에 바탕한 사실 보도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는 이런 사안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영향력에 걸맞은 의무도 다하려는 것이다.

연합뉴스의 경우 콘텐츠평가실장이 고충처리인을 겸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고충처리인은 접수된 민원을 살펴본 뒤 관련 부서에 검토·처리를 의뢰한다. 해당 기사를 다룬 기자와 데스크가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담당 부국장과 조치 여부와 방법을 상의한 뒤 편집총국장의 최종 허가를 받아 처리하게 된다. 고충처리인은 이 과정에서 내부 관계자 및 민원인의 말을 경청하고, 사안을 정리해 쉽게 설명하고, 때론 조언하거나 중재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는 처리 결과를 요약 기록해 두고 관련 법규에 따라 활동 내역을 연간 1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와 별도로 민원인이 해당 기사 출고 부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연합뉴스의 경우 하루에 1천 3백여 건의 기사 외에도 많은 양의 사진, 영상, 그래픽 등의 콘텐츠를 출고한다. 이 점을 감안, 민원인의 편의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개별 부서 접수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보도로 인한 피해를 사후 구제하는 일을 넘어서 문제를 예방해 독자의 불만을 줄이는 한편, 공정하고 품질 좋은 보도를 하기 위한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일종의 사의 옴부즈맨 제도인 수용

자권익위원회가 그것이다. 각계의 덕망 있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열어 연합뉴스 보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위원회에도 고충처리인인 콘텐츠평가실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사는 뉴스콘텐츠 제작과 편집에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차제에 언론중재위에 몇 가지를 요청한다. 실명 보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법원이나 언론중재위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매우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써 시민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언론에는 족쇄가 되는 측면이 있다. 기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지나치게 방어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공익적 목적에서 당연히 실명 보도할 공인이나 대기업 등에 관한 보도조차 익명처리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언론중재위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개선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충처리인의 고충'도 살펴줬으면 한다. 고충처리인으로서 필자는 민원인의 입장을 잘 들어주고 친절하게 설명만 해도 절반 이상 해결된다고 여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자'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다양한 사례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지식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늘 절감한다. 갈등 해결 방법과 기술도 익힐 필요가 있으나 교육을 받은 일도 없다. 대부분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은 임기가 있고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자주 바뀐다. 언론중재위 등 유관기관이 수시로 교육과 훈련 기회, 자료 등을 제공해주면 좋겠다. 고충처리인에게 수시로 자문해주는 '핫라인'을 개설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조정성립률 90%’

환자와 의사 모두의 고통을 따뜻하게 보듬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글. 백승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배경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해 분쟁화되면 잘잘못을 가리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계는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두고 오랜 세월 갈등을 빚어왔다. 법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피고의 유책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소송에서 불리하다고 여기는 환자 측은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해왔다. 의료인들은 대부분 1심판결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와 상고로까지 이어지는 의료소송에 수년씩 매달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해치는 피해를 입게 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의료소송으로 인한 물질적(소송 비용 및 기간),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조정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3년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법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설립되어 올해로 2주년을 맞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특징

의료중재원에는 「의료사고감정단」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사고감정단」에서는 의료사고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후유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해 감정한다. 환자와 의료인간 오랜 갈등의 핵심이었던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의료중재원에 부여된 것이다. 「의료사고감정단」은 의료인뿐 아니라 법조인, 소비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시행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법조인과 의료인, 대학교수, 소비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감정내용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 조정결정과정을 이끌어가며 환자와 의료인 양측의 원만한 합의 및 조정을 유도한다.

의료분쟁 접수에서 조정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90일(1회 연장 시 최장 120일 소요)에 불과하며, 비용은 기본 수수료가 22,000원이다. 신속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의료중재원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2012년 4월 8일 개원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조정·중재한다. 보건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종별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을 대상으로 하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의료사고도 똑같이 다룬다. 외국인 환자를 위하여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18개 외국어 3자 통역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중재원은 또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의료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 대불제도는 법원 판결 등 타 기관의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 및 접수 현황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 설립 이후 2014년 1월까지 총 66,077건(2012년 26,831건, 2013년 36,099건, 2014년 1월 3,147건), 1일 평균 146.8건의 상담을 시행했다. 조정·중재신청은 총 2,021건(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1월 120건)이고, 조정참여율은 약 40.3%이다. 조정·중재 개시 사건에 대한 조정성립률은 88.5%이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의 모습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료상담(02-6210-01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신청 및 처리 현황

(2014년 1월말 기준, 단위 : 건)

구분	조정(중재)신청					처리내용			
	계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조정 개시	불참(각하)	신청 취하	참여 확인중
2012년	503(1)	186	76(1)	227	14	192(1)	305	6	-
2013년	1,398(1)	356	307	627(1)	108	551(1)	838	9	-
2014년	120	15	19	82	4	53	37	-	30
누계	2,021(2)	557	402(1)	936(1)	126	796(2)	1,180	15	30

※ 괄호 안 중재건수

※ 의료분쟁 조정·중재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된다.
이에 따른 조정참여율이 40.3%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사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 1) 과다한 통풍약 투여 후 사망한 사례

70대 A씨(환자)는 요통, 양 엉치통증, 신경인성 파행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척추 MRI검사를 받고 요추 3-4-5 협착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압박소견을 확인한 후, 양측미세현미경감압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재활치료과정에서 A씨의 피부가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A씨는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면역글로블린, 항히스타민제, 드레싱 등 집중치료를 받고, 균배양 검사결과에 따라 항생제, 항진균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성 쇼크로 3주의 투병 끝에 사망했다. 이에 자녀들이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의료중재원 감정부는 병원 측이 망인의 증세를 급성 통풍으로 진단하고 투약한 것과 관련해 약제의 처방이 부적절하고, 투여된 약물의 용량도 과용량이었다고 감정했다. 망인에게 투약한 자이로릭(Zyloric)의 부작용이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및 독성표피괴사용해와 같은 중대한 피부반응인데, 자이로릭(Zyloric)을 과다 투여해 세포

면역 상태가 악화되어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됐고, 패혈증(candida 진균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감정했다.

조정부는 이러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병원 측에 약물 투여상의 과실과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데 따른 법적인 손해배상금 지급할 것을 결정했고, 양측이 이를 수용했다.

사례 2) 사랑니 발치 계획 후 원치 않는 어금니를 발치한 사례

10대 B양(환자)은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위한 사랑니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했으나, 병원이 실수로 사랑니가 아닌 어금니를 발치했다.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환자 부모가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치료보장이었다. 이에 병원 측이 환자 측의 요구가 의료인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의료중재원 조정부는 양 당사자가 사실관계 및 과실의 유무 등에 대하여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손해배상의 액수에 대하여만 다투는 점, 양 당사자가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여 오랫동안 지속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감정 없이 신속절차로 조정을 진행했다. 조정부가 병원과 환자 측의 소통이 막힌 원인과 양측의 입장 차이를 살핀 결과 환자의 아버지는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현재 치료에 바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금전 배상이 아닌 병원의 책임 있는 치료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조정부는 환자 측에게 향후 치료계획을 세워 오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병원 측과의 협의 시간을 가졌다.

병원과 환자 측은 향후치료계획서를 토대로 조정부의 법적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배상 결정안을 마련했다.

사례 3) 전립선 마사지 부작용으로 치질 생겼다고 생각한 환자, 의사와 분쟁

C씨(환자)는 ○○병원에서 만성전립선염 치료를 받던 중 치질이 생겼다. C씨는 치료과정에서 전립선 마사지를 병행했는데 이 마사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병원 측에서 아무런 반응과 설명 없이 무리하게 마사지를 계속 시행해 치질이 생긴 것이라고 의심했다. C씨는 병원 측이 원래 있던 치질이며 며칠 고생하시면 좋아진다는 대답만하고 제대로 응대를 해주지 않았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의료중재원 감정부는 병원 측이 무리하게 전립선 마사지를 시행해 항문통증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숨어있던 치핵이 급격히 재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립선 마사지로 인하여 없던 새로운 치핵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감정했다.

조정부는 마사지로 인해 치핵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에 의료적인 문제보다 감정이 격화된 원인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고 양측의 감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했다. 실제로 C씨의 분노는 병원 측의 무성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병원 측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가 있으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병원 측 의사의 경우 경력 20년 이상의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치료의 적절성에 대한 확신과 전문성을 침

해받지 않으려는 의사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방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정부에서는 신청인에게 치질 발생 원인과 전립선 마사지와 관계 등 의학적 판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며, 피신청인에게는 의학적 과실 판단을 떠나서,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는 의학적 사명감을 가진 전문의로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언급하여 양측이 상대에 대한 분노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했다.

금전적 배상요구의 기저에 깔린 불신과 갈등을 푸는 기관

의료중재원 조정부에 처음 몸을 담으며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손해배상이니만큼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가 주 업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건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이는 나의 선입견일 뿐이었음을 알게 됐다. 생명과 직결된 의료분쟁에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

환자 대부분이 더욱 많은 액수의 금전적 배상을 원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정말 드문 일이다. 실제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정황과 원인, 대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사실적인 내용과 함께, 과실 유무를 떠나 병원 측의 사건발생에 대한 도의적 위로와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의 원인과 실상을 알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신청인의 대부분이 환자 가족이다 보니 자신의 부주의와 게으름(병원선택, 수술방법 선택 등)이 내 피붙이에게 위해를 가했을 수도 있다는 자책과 고통이 커, 위로가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의사 또한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는 기저에는 환자와의 원만한 화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받으려는 마음이 깔려있다.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중시하는 것만큼, 의사 역시 환자치료를 통해 보람과 성취감을 얻는다. 환자의 생명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의술에만 초점을 맞추고, 환자심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오해와 의사소통의 부재가 불신과 갈등을 낳고, 당사자 간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악화되면서 의료중재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사회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심화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의료와 관련된 갈등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의료중재원은 환자와 의사 모두의 감정을 따뜻하고 바르게 보듬는 데 초점을 맞춰, 조정성립률을 90%대에 근접시키고 있다. 의료중재원 전 직원은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과 갈등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현대사회 전반에 만연한 갈등 치유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의료사고 감정은 '정확하게'
사건 당사자에게는 '공정하게'
사건 처리는 '신속하게'
몸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환자 측과
분쟁에 시달려 몹시 지쳐있는 의료인 측
모두를 따뜻하게 보듬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훈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지혜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 Persuasion & Rhetoric Report』

2014년 4월호 발간 (발간일 : 4월 1일)

설득을 위한 경청(傾聽)

설득을 부르는 중요한 습관인 경청
경청의 방해요인 및 경청을 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상대를 움직이는 논증의 기술(I)

갈등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기술, 논증,
일반화 논증, 인과관계 논증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 간 협상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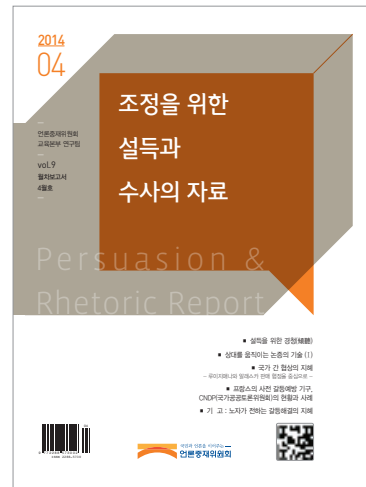
- 루이지애나와 알래스카 판매 협정을 중심으로 -
미국의 영토 확장을 위해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과
앤드류 존슨이 사용한 국가 간 협상 전략을 짚어본다.

프랑스의 사전 갈등예방 기구, CNDP(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현황과 사례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대화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CNDP
그 설립배경, 역할, 대표적인 토론 사례 등을 알아본다.

기고 : 노자가 전하는 갈등해결의 지혜

- 안성재 한국수사학회 총무이사 / 인천대 교육대학원 교수 -
노자의 도덕경에 나타난 고전의 정수를 통해
현대사회 갈등해결을 위한 철학적 탐색을 시도한다.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 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 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14년 6월 4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4년 2월 3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 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